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0. 1. 29. ~ 2. 11. [10일간, 추가조사일 제외]
- 감사인원 : 20명(공인회계사 포함)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분	학교법인	조직·인사	교비회계	입시·학사	시설·물품	산단회계	부속병원	계
지적건수	1	9	5	14	4	4	1	38

나. 세부지적 및 처분: “감사결과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에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기관)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	<p>일반경쟁 입찰대상 구매 수의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016. 5. 19.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국산 참깨 구매’건(계약금액 합계 102,500천원)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붙임】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내역”과 같이 2016. 5. 19.부터 2019. 10. 2.까지 일반경쟁 입찰대상 국산 참깨·들깨의 구매 17건(계약금액 합계 1,390,982천원)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8명)

【붙임】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kg, 천원)

회계연도	일자	계약건명	구매량	금액
2016	2016. 5. 19.	2차분 국산 참깨 구매	5,000	102,500
	2016. 7. 25.	3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700	113,220
	2016. 9. 2.	4차분 국산 들깨 구매	500	4,200
	2016. 10. 28.	5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520	69,252
	2016. 12. 29.	6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6,200	90,520
	소계		22,920	379,692
2017	2017. 4. 27.	1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250	71,175
	2017. 8. 11.	2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800	82,100
	2017. 11. 3.	3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500	69,600
	2018. 1. 2.	4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400	62,340
	2018. 2. 20.	5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3,750	61,350
	소계		25,700	346,565
2018	2018. 5. 4.	1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500	90,350
	2018. 8. 13.	2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900	86,170
	2018.10. 30.	3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7,500	110,500
	2019. 2. 11.	4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5,200	80,600
	소계		24,100	367,620
2019	2019. 4. 19.	1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6,750	103,275
	2019. 6. 27.	2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6,300	95,970
	2019. 10. 2.	3차분 국산 참깨, 들깨 구매	6,300	97,860
	소계		19,350	297,105
	합계		92,070	1,390,98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p>직원채용 서류심사 시 출신대학 차별</p> <p>○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고려대학교 정관」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의료원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인사는 기회균등과 공정을 기하고, 정실에 치우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p> <p>-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6. 6. 9. 정규직(행정직 등 4개 직종)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채용공고 [접수기간: 2016.6.9.(목) ~ 6.16.(목), 전형방법 : 서류심사→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응시자격: 행정직(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의료관련 직종(직무관련 면허증 소지자) 후, 지원자 649명에 대한 서류심사¹⁾를 실시 하면서 □□학원에서 발행한 2016년 수능배치표상 채용직종별 각 대학의 관련 학과 점수(행정직: 경영학과, 간호직 및 의료기술직: 관련 학과)를 기준으로 작성한 대학 순위표에 따라 출신대학을 5개 등급(A~E등급)으로 구분 하여 최고 30점에서 최저 26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 하는 등 【붙임 1】 “서류전형 시 출신학교 등급 부여 현황”과 같이 2016. 6. 부터 2019. 10. 까지 14개 직종,</p>	<p>○ 통보(문책)(4명)</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p>94회에 걸쳐 정규직 채용 시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수능배치표를 기준으로 지원자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한 사실이 있으며,</p> <p>- 또한,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8년 정규직 공채부터 서류전형 배점 항목 및 기준을 2017년까지 적용한 ① 출신교(30~26점), ② 학점(20~10점), ③ 자기소개서(30~10점) 총 80점 만점에서 ① 출신교(40~32점), ② 학점(20~10점) 총 60점 만점으로 변경하여 출신학교의 배점비중을 확대하였으며, 학점 항목의 배점기준 또한 2017년까지 지원자의 대학 평균평점에 따라 6등급(20~10점)으로 부여하던 것을 출신대학 등급(A~E등급)에 따라 100%~80%의 가중치²⁾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등 【붙임 2】 “연도별 서류전형 배점 기준”과 같이 정규직 공개채용의 서류전형 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주요 전형 요소로 활용한 사실이 있음</p>	

- 1) 서류심사 배점기준 : 출신대학(30점), 대학학점(20점), 자기소개서(30점)
2) 서류전형 시 학점항목의 배점 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학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 구간에 따라 점수부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h>학점</th><th>점수</th></tr> <tr><td>4.2이상</td><td>20</td></tr> <tr><td>3.9이상</td><td>19</td></tr> <tr><td>3.6이상</td><td>18</td></tr> <tr><td>3.3이상</td><td>17</td></tr> <tr><td>3.0이상</td><td>16</td></tr> <tr><td>3.0미만</td><td>10</td></tr> </table>	학점	점수	4.2이상	20	3.9이상	19	3.6이상	18	3.3이상	17	3.0이상	16	3.0미만	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점을 학교등급과 연계하여 가중치 반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h>학교(전공)</th><th>가중치</th></tr> <tr><td>A등급</td><td>100%</td></tr> <tr><td>B등급</td><td>95%</td></tr> <tr><td>C등급</td><td>90%</td></tr> <tr><td>D등급</td><td>85%</td></tr> <tr><td>E등급</td><td>80%</td></tr> </table>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th>학점</th><th>점수</th></tr> <tr><td>4.2이상</td><td>20</td></tr> <tr><td>3.9이상</td><td>19</td></tr> <tr><td>3.6이상</td><td>18</td></tr> <tr><td>3.3이상</td><td>17</td></tr> <tr><td>3.0이상</td><td>16</td></tr> <tr><td>3.0미만</td><td>10</td></tr> </table>	학점	점수	4.2이상	20	3.9이상	19	3.6이상	18	3.3이상	17	3.0이상	16	3.0미만	10	20
	학점	점수																																												
4.2이상	20																																													
3.9이상	19																																													
3.6이상	18																																													
3.3이상	17																																													
3.0이상	16																																													
3.0미만	1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학점	점수																																													
4.2이상	20																																													
3.9이상	19																																													
3.6이상	18																																													
3.3이상	17																																													
3.0이상	16																																													
3.0미만	10																																													
<p>※B등급대학 출신학생은 학점 4.2일 경우 95%만 인정 (4.2×95%=3.99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19점 부여)</p>																																														

【붙임 1】

서류전형 시 출신학교 등급 부여 현황

연번	직종	채용계획 (채용일자)	채용 인원	응시 인원	출신학교 등급(점수, 합격인원)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1	행정 직 (사원)	2016.6.9. (2016.7.11.)	1	48		30점 (1명)	29점 (0명)	28점 (0명)	27점 (0명)	26점 (0명)	
		2016.12.30. (2017.2.3.)	1	370		30점 (0명)	29점 (0명)	28점 (0명)	27점 (1명)	26점 (0명)	
		2017.3.13. (2017.3.29.)	1	23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6.29. (2017.7.27.)	1	15		30점 (0명)	29점 (1명)	28점 (0명)	27점 (0명)	26점 (0명)	
		2018.1.19. (2018.2.26.)	7	550		40점 (6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8.6.4 (2018.6.29.)	9	238		40점 (5명)	38점 (4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9.1.2. (2019.1.29.)	7	552		40점 (4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1명)	32점 (1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3.25. (2019.4.17.)	1	30		30점 (0명)	28점 (0명)	26점 (0명)	24점 (1명)	22점 (0명)	
		2019.5.3. (2019.6.13.)	14	187		40점 (5명)	38점 (5명)	36점 (4명)	34점 (0명)	32점 (0명)	
2	행정 직 (심사평가)	2016.12.30. (2017.2.3.)	1	22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6.29. (2017.7.27.)	1	16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3	행정 직 (적정진료)	2018.1.19. (2018.2.26.)	1	8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4	행정 직 (사회사업)	2018.1.19. (2018.2.26.)	1	41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5.3. (2019.6.13.)	3	28		38점 (1명)	36점 (1명)	34점 (1명)	32점 (0명)	30점 (0명)	
5	행정 직 (임상시험)	2018.6.4 (2018.6.29.)	1	1	42점 (0명)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6	행정 직 (전산)	2016.6.9. (2016.7.11.)	1	28		30점 (0명)	29점 (0명)	28점 (0명)	27점 (0명)	26점 (1명)	
		2017.6.29. (2017.7.27.)	1	22		30점 (0명)	29점 (0명)	28점 (0명)	27점 (1명)	26점 (0명)	
		2017.10.18. (2017.11.20.)	1	11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2018.6.4 (2018.6.29.)	2	21	42점 (0명)	40점 (0명)	38점 (1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2018.9.6 (2018.10.10.)	2	18		30점 (1명)	28점 (0명)	26점 (0명)	24점 (1명)	22점 (0명)	
		2019.6.27. (2019.7.24.)	1	11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7	간 호 사 (기졸업 채용)	2016.6.9. (2016.7.11.)	3	29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3명)	
		2016.12.30. (2017.2.3.)	6	16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2명)	32점 (3명)	
		2017.3.13. (2017.3.29.)	2	38		40점 (1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6.29. (2017.7.27.)	11	82		40점 (0명)	38점 (4명)	36점 (2명)	34점 (2명)	32점 (3명)	

연번	직종	채용계획 (채용일자)	채용 인원	응시 인원	출신학교 등급(점수, 합격인원)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017.8.11. (2017.9.5.)	1	9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10.18. (2017.11.20.)	2	11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2018.1.19. (2018.2.26.)	1	141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8.6.4 (2018.6.29.)	1	2	42점 (0명)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8.8.16. (2018.8.31.)	2	7	모집배수 미충족 (등급 미부여)						
		2018.9.20. (2018.10.22)	2	12		30점 (0명)	28점 (1명)	26점 (0명)	24점 (1명)	22점 (0명)	
		2018.11.27. (2018.12.19.)	1	30	30점 (0명)	28점 (0명)	26점 (1명)	24점 (0명)	22점 (0명)	20점 (0명)	
		2019.2.11. (2019.3.15.)	2	57	30점 (0명)	28점 (0명)	26점 (0명)	24점 (0명)	22점 (0명)	20점 (2명)	
		2019.1.2. 2019.1.29.	3	10	42점 (1명)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1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5.3. (2019.6.13.)	2	8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1명)	30점 (0명)	
		2019.6.27. (2019.7.24.)	1	7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2019.8.28. (2019.9.23.)	1	4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2019.10.28. (2019.11.21.)	2	31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간호사 (신규 간호사 공채)	2016.5.17. (2016.7.22.)	623	2,786	-	A등급 (88명)	B등급 (183명)	C등급 (106명)	D등급 (131명)	E등급 (115명)
2017.5.25. (2017.8.9.)	606		2,931	-	A등급 (64명)	B등급 (212명)	C등급 (130명)	D등급 (112명)	E등급 (88명)		
2018.5.23. (2018.7.26.)	662		3,220	S등급 (33명)	A등급 (42명)	B등급 (238명)	C등급 (117명)	D등급 (100명)	E등급 (132명)		
2019.5.22. (2019.7.26.)	796		3,619	S등급 (36명)	A등급 (50명)	B등급 (254명)	C등급 (189명)	D등급 (116명)	E등급 (151명)		
2019.8.12. (2019.9.11.)	147		427	S등급 (2명)	A등급 (5명)	B등급 (27명)	C등급 (28명)	D등급 (47명)	E등급 (38명)		
2019.10.11. (2019.11.21.)	124		312	S등급 (1명)	A등급 (2명)	B등급 (13명)	C등급 (19명)	D등급 (25명)	E등급 (64명)		
8	방사 선사	2016.6.9. (2016.7.11.)	2	149	40점 (0명)	38점 (0명)	36점 (2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6.12.30. (2017.2.3.)	8	184	40점 (5명)	38점 (1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1명)	30점 (0명)	
		2017.6.29. (2017.7.27.)	2	124	40점 (2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8.1.19. (2018.2.26.)	5	129		40점 (2명)	38점 (2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8.6.4. (2018.6.29.)	9	206	42점 (4명)	40점 (1명)	38점 (4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9.1.2. 2019.1.29.	5	45	42점 (1명)	40점 (0명)	38점 (1명)	36점 (2명)	34점 (1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3.11. (2019.3.26.)	2	130	30점 (0명)	28점 (0명)	26점 (1명)	24점 (1명)	22점 (0명)	20점 (0명)	

연번	직종	채용계획 (채용일자)	채용 인원	응시 인원	출신학교 등급(점수, 합격인원)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019.5.3. (2019.6.13.)	4	20	40점 (1명)	38점 (0명)	36점 (2명)	34점 (1명)	32점 (0명)	30점 (0명)	
		2019.6.27. (2019.7.24.)	4	27		40점 (2명)	38점 (1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9	임상 병리사	2016.6.9. (2016.7.11.)	3	133	40점 (2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30점 (0명)	
		2016.12.30. (2017.2.3.)	2	138	40점 (1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7.6.29. (2017.7.27.)	7	194	40점 (3명)	38점 (3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7.8.11. (2017.9.5.)	1	54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8.1.19. (2018.2.26.)	13	282		40점 (4명)	38점 (5명)	36점 (2명)	34점 (1명)	32점 (1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8.6.4 (2018.6.29.)	4	174	42점 (2명)	40점 (0명)	38점 (2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9.1.2. 2019.1.29.	4	65	42점 (3명)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5.3. (2019.6.13.)	1	88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9.6.27. (2019.7.24.)	2	46		40점 (0명)	38점 (2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9.8.28. (2019.9.23.)	3	78		40점 (2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10	물리 치료사	2016.6.9. (2016.7.11.)	1	22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7.6.29. (2017.7.27.)	1	24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8.1.19. (2018.2.26.)	2	20		40점 (2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8.6.4 (2018.6.29.)	1	8	42점 (0명)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11	의무 기록사	2016.6.9. (2016.7.11.)	3	88	40점 (0명)	38점 (1명)	36점 (2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0명)	
		2016.12.30. (2017.2.3.)	2	76		40점 (2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6.29. (2017.7.27.)	3	39		40점 (0명)	38점 (3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10.18. (2017.11.20.)	4	52		40점 (0명)	38점 (3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2018.1.19. (2018.2.26.)	3	63		40점 (0명)	38점 (3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8.6.4 (2018.6.29.)	4	53		40점 (0명)	38점 (3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2019.1.2. 2019.1.29.	2	39		40점 (0명)	38점 (2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8.28. (2019.9.23.)	1	35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12	응급 구조사	2018.1.19. (2018.2.26.)	2	17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2018.6.4 (2018.6.29.)	1	6	42점 (0명)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13	언어 치료사	2016.12.30. (2017.2.3.)	1	9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연번	직종	채용계획 (채용일자)	채용 인원	응시 인원	출신학교 등급(점수, 합격인원)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018.1.19. (2018.2.26.)	1	22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14	영양사	2016.12.30. (2017.2.3.)	3	15		40점 (0명)	38점 (1명)	36점 (1명)	34점 (1명)	32점 (0명)	
		2018.1.19. (2018.2.26.)	1	13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15	약사	2018.1.19. (2018.2.26.)	7	19		40점 (1명)	38점 (5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2018.11.6. (2018.12.4.)	13	19	30점 (0명)	28점 (1명)	26점 (7명)	24점 (2명)	22점 (3명)	20점 (0명)	
		2019.6.27. (2019.7.24.)	2	3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2019.10.11.) 2019.11.21.	9	34		30점 (4명)	28점 (0명)	26점 (5명)	24점 (0명)	22점 (0명)	
16	시설기사	2019.1.2. 2019.1.29.	1	7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비정규직 전환포함
		2019.5.3. (2019.6.13.)	5	41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30점 (4명)	
17	건축기사	2016.12.30. (2017.2.3.)	1	93		40점 (1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7.6.29. (2017.7.27.)	2	63		40점 (1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8.6.4 (2018.6.29.)	1	39	42점 (0명)	40점 (0명)	38점 (1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0명)	
		2019.8.28. (2019.9.23.)	1	17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18	통신기사	2016.6.9. (2016.7.11.)	1	7	모집배수 미충족 (등급 미부여)						
		2019.7.26. (2019.8.26.)	1	12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19	실험기사	2017.10.18. (2017.11.20.)	1	5		40점 (0명)	38점 (0명)	36점 (1명)	34점 (0명)	32점 (0명)	
		2018.1.19. (2018.2.26.)	1	7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1명)	32점 (0명)	
		2018.11.22. (2018.12.6.)	1	5	모집배수 미충족 (등급 미부여)						
		2019.5.3. (2019.6.13.)	2	14	40점 (0명)	38점 (0명)	36점 (0명)	34점 (0명)	32점 (1명)	30점 (1명)	

【붙임 2】

연도별 서류전형 배점 기준

① 행정직 서류전형 연도별 배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출신 교	A등급(30) B등급(29) C등급(28) D등급(27) E등급(26)	30	A등급(30) B등급(29) C등급(28) D등급(27) E등급(26)	30	A등급(40) B등급(38) C등급(36) D등급(34) E등급(32)	40	A등급(40) B등급(38) C등급(36) D등급(34) E등급(32)	40																								
학점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20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20	학교(전공)등급을 가중치 반영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r><td>학교(전공)</td><td>가중치</td></tr> <tr><td>A등급</td><td>100%</td></tr> <tr><td>B등급</td><td>95%</td></tr> <tr><td>C등급</td><td>90%</td></tr> <tr><td>D등급</td><td>85%</td></tr> <tr><td>E등급</td><td>80%</td></tr> </table> ↓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20	학교(전공)등급을 가중치 반영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auto;"> <tr><td>학교(전공)</td><td>가중치</td></tr> <tr><td>A등급</td><td>100%</td></tr> <tr><td>B등급</td><td>95%</td></tr> <tr><td>C등급</td><td>90%</td></tr> <tr><td>D등급</td><td>85%</td></tr> <tr><td>E등급</td><td>80%</td></tr> </table> ↓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2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자기 소개 서	A(30) B(20) C(10)	30	A(30) B(20) C(10)	30	-		-																									
가점	경력, 어학점수, 보훈 등		경력, 어학점수, 보훈 등		우대전공, 어학점수, 전문자격증, 보훈 등		우대전공, 어학점수, 전문자격증, 보훈 등																									
합계		80		80		60		60																								

② 행정직 외 서류전형 연도별 배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세부기준	배점																								
출신교	A등급(40) B등급(38) C등급(36) D등급(34) E등급(32)	40	A등급(40) B등급(38) C등급(36) D등급(34) E등급(32)	40	A등급(40) B등급(38) C등급(36) D등급(34) E등급(32)	40	A등급(40) B등급(38) C등급(36) D등급(34) E등급(32)	40																								
학점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20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20	학교(전공)등급을 가중치 반영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 <table border="1"> <tr><td>학교(전공)</td><td>가중치</td></tr> <tr><td>A등급</td><td>100%</td></tr> <tr><td>B등급</td><td>95%</td></tr> <tr><td>C등급</td><td>90%</td></tr> <tr><td>D등급</td><td>85%</td></tr> <tr><td>E등급</td><td>80%</td></tr> </table>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20	학교(전공)등급을 가중치 반영 4.2이상(20) 3.9이상(19) 3.6이상(18) 3.3이상(17) 3.0이상(16) 3.0미만(10) ↓ <table border="1"> <tr><td>학교(전공)</td><td>가중치</td></tr> <tr><td>A등급</td><td>100%</td></tr> <tr><td>B등급</td><td>95%</td></tr> <tr><td>C등급</td><td>90%</td></tr> <tr><td>D등급</td><td>85%</td></tr> <tr><td>E등급</td><td>80%</td></tr> </table>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2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학교(전공)	가중치																															
A등급	100%																															
B등급	95%																															
C등급	90%																															
D등급	85%																															
E등급	80%																															
자기 소개서	A(30) B(20) C(10)	30	A(30) B(20) C(10)	30	-	-	-	-																								
가점	관련 경력 및 자격, 임시직 및 병원 근무경력, 보훈 등		관련 경력 및 자격, 임시직 및 병원 근무경력, 보훈 등		관련 경력 및 자격, 임시직 및 본원인턴 근무경력		관련 경력 및 자격, 임시직 및 본원인턴 근무경력																									
합계		90		90		60		60																								

- ※ 행정직외 : 간호직(신규간호사 공개채용 제외), 의료기술직, 일반기술직
- ※ S등급 부여 직종 : 간호사(2018~2019), 의료기술직(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 A등급 대비 2점 추가 부여(한 등급 상향 적용)

③ 간호직(졸업예정자 신규채용) 서류전형 기준(2016~2019)

구분		2016, 2017년	2018년	2019년
4년제	S등급	-	상위 100% 이내	상위 100% 이내
	A등급	상위 90% 이내	상위 90% 이내	상위 90% 이내
	B등급	상위 70% 이내	상위 70% 이내	상위 70% 이내
	C등급	상위 50%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40% 이내
	D등급	상위 15% 이내	상위 15% 이내	상위 15% 이내
3년제	E등급	상위 10% 이내	상위 10% 이내	상위 10% 이내
	A등급	상위 50%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40% 이내
	B등급	상위 15% 이내	상위 15% 이내	상위 15% 이내
	C등급	상위 10% 이내	상위 10% 이내	상위 10% 이내

※ 재학 성적(4년제 6학기, 3년제 4학기 기준)의 학교석차가 학교등급별 기준에 충족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p>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p> <p>○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교원초빙규정」 제18조,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학과(부)에 교원초빙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학과(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원초빙을 위한 심사 절차는 학과(부) 심사위원회가 지원자의 경력, 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1차 기초심사와 강의능력, 전공영역 적합성, 학문적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전공심사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지원자의 전공영역 적합성 및 학문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2차 전공심사는 교외평가위원의 수가 전체 평가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①</p> <p>- 고려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ㄱ학과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지원자 A의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인 고려대학교 ㄱ학과 B를 1차 기초심사³⁾위원 및 2차 전공심사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임교원 채용심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붙임 1】 “지원자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 현황”과</p>	<p>【①,②번 관련】</p> <p>○ 기관경고</p> <p>【①번 관련】</p> <p>○ 경고(43명)</p> <p>○ 통보</p> <p>- 교원채용 심사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p> <p>【②번 관련】</p> <p>○ 경고(2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과정 지도교수였던 위 B 등 43명을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후 채용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업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전공심사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②</p> <p>- 고려대학교는 2018학년도 1학기 2학과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전공영역 적합성 및 학문적 우수성 평가를 위한 2차 전공심사 위원 총 7명 중 2명만 외부위원 (28.6%)으로 위촉하는 등 【붙임 2】 “전임교원 신규 채용 전공심사위원 구성 관련 외부위원 미충족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2학과 등 3개 학과에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외부위원을 1/3 이상 위촉하지 않고 채용심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p>	

3) 기초심사(제1차심사-서면평가) : 경력(20점), 연구계획서(10점), 연구실적(30점)

4) 전공심사(제2차심사-면접 및 심층평가) : 강의능력(20점), 본교에 대한 기여가능성(20점),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20점), 전공영역 적합성(20점), 학문적 우수성(40점)

【붙임 1】

지원자의 석·박사과정 지도교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위촉 현황

연 번	학년도 - 학기	채용학과	지원자	심사위원	논문명 (지도교수)	심사분야	합불 여부
1	2016-1	인문대학 기학과	A	B	- 【석사】 (B)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X
					- 【박사】 (B)		
2	2016-1	인문대학 기학과	-	B	- (B)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X
...		중략					
63	2019-2	-	-	-	-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O
					-		
64	2019-2	-	-	-	-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O
					-		
65	2019-2	-	-	-	-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X
					-		

※ 기초심사(제1차심사-서면평가): 경력(20점), 연구계획서(10점), 연구실적(30점)

※ 전공심사(제2차심사-면접 및 심층평가): 강의능력(20점), 본교에 대한 기여가능성(20점),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인성(20점), 전공영역 적합성(20점), 학문적 우수성(40점)

【붙임 2】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공심사위원 구성 관련 외부위원 미충족 현황

연번	채용 시기	모집학과	모집분야	심사위원수			외부위원 비율(%)
				내부 위원	외부 위원	합계	
1	2018-1	ㄴ학과	ㄴ학 전 분야	5	2	7	28.6
2	2018-2	-	-	7	3	10	30
3	2019-2	-	-	6	2	8	2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p>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르학과는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1명을 채용하면서 당시 르과 소속 전임교원 중 고려대학교 르과 학사학위 소지자가 360명 중 325명(90.3%)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고려대학교 르과 학사학위 소지자인 C를 채용하는 등 【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르과 등 2개 학과에서 전임교원 신규채용 당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였는데도 동일대학 학위 소지자인 위 C 등 50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경고(6명)

【붙임】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채용 현황

연 번	신규 채용자 현황				채용 후 교원구성 (명, %)			당시 심사위원장
	소 속	임용학기 (임용일)	성명	출신학과(전공)	교원수	동일학과(학부) 학위소지자 수	비율	
1	르과	2016-2 (2016.9.1.)	C	고려대학교 (르과)	373	338	90.4	-
2	르과	2016-2 (2016.9.1.)	-	고려대학교 (르과)	373	338	90.4	-
3	르과	2016-2 (2016.9.1.)	-	고려대학교 (르과)	373	338	90.4	-
4	르과	2016-2 (2016.9.1.)	-	고려대학교 (르과)	373	338	90.4	-
5	르과	2016-2 (2016.9.1.)	-	고려대학교 (르과)	373	338	90.4	-
6	르과	2016-2 (2016.9.1.)	-	고려대학교 (르과)	373	338	90.4	-
...	중략							
45	르과	2019-2 (2019.9.1.)	-	고려대학교 (르과)	393	343	87.3	-
46	르과	2019-2 (2019.9.1.)	-	고려대학교 (르과)	393	343	87.3	-
47	르과	2019-2 (2019.9.1.)	-	고려대학교 (르과)	393	343	87.3	-
48	르과	2019-2 (2019.9.1.)	-	고려대학교 (르과)	393	343	87.3	-
49	르과	2019-2 (2019.9.1.)	-	고려대학교 (르과)	393	343	87.3	-
50	르과	2019-2 (2019.9.1.)	-	고려대학교 (르과)	393	343	87.3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5	<p>취업지원대상자 가점 未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 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3. 사립학교로 정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점을 하여야 하고,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전형별 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하며,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정규직 사무직원 채용 공고'의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9. 8. 사무직원 공개채용(행정분야 등 3개 직종) 서류전형의 평가항목 및 점수 비율을 ①지원서(45%), ②자기소개서(45%), ③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른 우대점수(10%)로 정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인 D가 입사지원서에 취업지원 대상자로 표기하였는데도 서류전형 점수 산정 시 가점(5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붙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현황”과 같이 2019년 본교 및 세종캠퍼스 사무직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시, 위 D 등 8명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서류전형을 진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5명) ○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미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바람

【붙임】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미부여 현황

채용명 (공고일)	직종 (채용 인원)	응시자	취업지원 가점	서류전형 결과					
				지원서 (A)	자기 소개서 (B)	우대 점수 (C)	산정점수 (실제점수)	산정순위 (실제순위)	합격 여부
2019년 (본교) 사무직 공채 (*19.7.19)	행정직 (10명)	D	5%	45	45	5	95 (100)	1 (1)	합격
		-	10%	30	30	3	63 (73)	131 (37)	불합격
		-	5%	20	30	3	53 (58)	307 (235)	불합격
		-	10%	20	15	3	38 (48)	753 (580)	불합격
		-	5%	20	15	3	38 (43)	753 (662)	불합격
		-	5%	20	15	0	35 (40)	842 (663)	불합격
		-	5%	20	15	0	35 (40)	842 (663)	불합격

채용명 (공고일)	직종 (채용 인원)	응시자	취업지원 가점	서류전형 결과					
				지원동기 (A)	업무 적합성 (B)	경력 및 전문성 (C)	산정점수 (실제점수)	산정순위 (실제순위)	합격 여부
2019년 세종 캠퍼스 사무직 공채 (*19.5.24)	행정직 (4명)	-	10%	22.5	25	32.5	80점 (90점)	27 (21)	불합격

※ 서류전형 합격 커트라인 : 본교(24위), 세종캠퍼스(20위)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p>전임교원 임면사항 이사회 未보고</p> <p>○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53조의2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임면하고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고려대학교는 2016. 3. 1. □과 E 등 50명의 전임교원을 신규임용하고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회에 신규임용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등 【붙임】 “교원 신규임용 관련 법인 이사회 미보고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 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279명의 신규임용 사항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주의(2명)

【붙임】

교원 신규임용 관련 법인 이사회 미보고 현황

학기	신규임용
2016-1학기	□과 E 등 50명
2016-2학기	35명
2017-1학기	14명
2017-2학기	29명
2018-1학기	22명
2018-2학기	41명
2019-1학기	28명
2019-2학기	60명
소계	279명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7	<p>未허가 사외이사 겸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르면 교수·부교수·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르면 사외이사 겸직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67조 및 「고려대학교 교원의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에 따르면 타 기관에서 겸하려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이 있는 업무라면 반드시 겸직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겸직을 허가받고자 하는 교원은 겸직 시작일 1개월 전에 대학(원)장 등의 승인을 받아 총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사외이사로 겸직하려는 경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B학과 F는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에 사외이사(2016. 3. 30. ~ 2018. 3. 24.)로 겸직하는 등 【붙임】 “未허가 사외이사 겸직 현황”과 같이 2016. 3. 30.부터 2020. 2. 7.까지 F 등 6명은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 없이 △△ 등 6개 사기업체(총 9회)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6명)

【붙임】

未허가 사외이사 겸직 현황

연번	소속	이름	겸직기관명	겸직기관 직위	근무 형태	겸직기간	보수 등 총액(천원)
1	B대학 B학과	F	△△	사외이사	비상근	2016.3.30.~2017.3.30.	16,800
						2017.3.24.~2018.3.24.	16,800
2	B대학 B학과	-	-	사외이사	비상근	2018.3.28.~2021.3.27.	66,000
3	B대학 B학과	-	-	사외이사	비상근	2019.3.22.~2022.3.21.	60,000
4	- (-)	-	-	사외이사	비상근	2017.3.24.~2019.3.24.	24,000
						2019.3.29.~2021.3.29.	24,000
5	- (-)	-	-	사외이사	비상근	2017.3.27.~2019.3.26.	무보수
						2019.3.27.~2021.3.26.	무보수
6	- (-)	-	-	사외이사	비상근	2018.3.23.~2020.3.22.	24,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8	<p>징계의결 요구 未이행</p> <p>○ 「사립학교법」 제61조 및 제64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고려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등 관련 국가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학교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도,</p> <p>- 고려대학교는 2016. 4. 29. 르과 G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리베이트)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고' 처분(2016. 6. 2.)만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경고(5명)</p>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p>연구년 대상자 선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2016. 9. 1. 일부 개정)」 제5조에 따르면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교원은 6개월, 근속기간이 6년 이상인 교원은 1년간 연구년 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근속기간의 기산점은 신입교원은 신규 임용일을, 재직교원은 직전 연구년 종료일로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학과(부)는 연구년 수혜 교원을 선정하고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연구년 수행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연구년 결과보고서와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장 및 대학(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출간하지 못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을 차기 연구년 부여를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따라 학(부)장 전결사항 - 고려대학교는 2018. 하반기 연구년 교수를 선정하면서 사대학원 H가 직전 연구년의 연구실적물을 제출기한(2014. 8. 31.)보다 2년 3개월이 경과된 2016. 12. 12.에 제출하여 동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연구년 부여 최소 근속기간(6년)에 미달되는데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하는 등 【붙임】 “연구년 선정 부적격자 현황”과 같이 2018. 3. 1.부터 2019. 9. 1.까지 직전 연구년 교수로 선정되고 연구실적물을 지연 제출하여 차기 연구년 최소 근속기간에 미달되는 위 H 등 교원 7명을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5명)

【붙임】

연구년 선정 부적격자 현황

소속	이름	직전 연구년 실적 제출				차기 연구년 선정 자격		
		연구년 종료일 (a)	제출 기한	제출일	초과기간 (b)	연구년 기간	최소 근속 기간 (c)	자격 도래일 (a)+(b)+(c)
사대학원	H	2012. 8.31.	2014. 8.31.	2016. 12.12.	2년 3개월 12일	2018.9.1.~ 2019.8.31.	6년	2020.12.12.
-	-	2013. 8.31.	2015. 8.31.	2017. 10.8.	2년 1개월 8일	2019.9.1.~ 2020.8.31.	6년	2021.10.8.
-	-	2013. 2.28.	2015. 2.28.	2016. 8.9.	1년 5개월 12일	2019.3.1.~ 2020.2.29.	6년	2020.8.9.
-	-	2012. 2.29.	2014. 2.28.	2015. 7.11.	1년 4개월 13일	2018.9.1.~ 2019.8.31.	6년	2019.7.11.
-	-	2012. 2.29.	2014. 2.28.	2014. 6.25.	3개월 28일	2018.3.1.~ 2019.2.28.	6년	2018.6.25.
-	-	2012. 2.29.	2014. 2.28.	2014. 4.16.	1개월 19일	2018.3.1.~ 2019.2.28.	6년	2018.4.16.
-	-	2016. 2.29.	2018. 2.28.	2018. 3.5.	5일	2019.3.1.~ 2019.8.31.	3년	2019.3.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0	<p>기간제(냉난방계절직)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p> <p>○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위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통보</p> <p>-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맞게 인사 운영을 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p>○ 통보(고용노동부)</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 고려대학교는 I를 기간제근로자(냉난방계절직, 지원직(Ⅱ)*)로 5개월 계약하고, 1개월 경과 후 공개모집**을 통해 동일인을 5개월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3. 5. 1. ~ 2019. 9. 30.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5개월씩 재계약하면서 합산 2년(13회)이 초과하였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2019. 11. 1. ~ 2020. 3. 31.)을 체결하는 등 【붙임】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과 같이 2012. 12. 1. 부터 2020. 4. 30.까지 위 I 등 근로자 5명***이 근로기간 합산**** 2년을 초과하였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p> <p>* 「일반직(Ⅱ), 지원(Ⅱ)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부서장이 채용·전보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채용한 근로자</p> <p>** 직전 계약자의 경우, 면접시험 대신 근무성적평가자료로 갈음하여 신규지원자와 다른 채용절차를 거쳤으며, 【참고】와 같이 ’16.5.1.이후 현재까지 지원자 전원 합격</p> <p>*** 만55세 이상자(기간제법 제4조 적용 제외자) 및 합산 2년 미만자 제외</p> <p>****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질의회신집(2018.12월) p.130~131] ①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경우 등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②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고용차별개선과-448, 2016.3.8.)</p>	

【붙임】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

성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근무 개월	성명 (생년월일)	계약기간	근무 개월	
I (-)	2019-11-01 ~ 2020-03-31	5	-	2019-12-01 ~ 2020-04-30	5 (연속성 단절)	
	2019-05-01 ~ 2019-09-30	5		2018-06-01 ~ 2018-10-31	5	
	2018-11-01 ~ 2019-03-31	5		2017-12-01 ~ 2018-04-30	5	
	2018-05-01 ~ 2018-09-30	5		2017-06-01 ~ 2017-10-31	5	
	2017-11-01 ~ 2018-03-31	5		2016-12-01 ~ 2017-04-30	5	
	2017-05-01 ~ 2017-09-30	5		2016-06-01 ~ 2016-10-31	5	
	2016-11-01 ~ 2017-03-31	5		2015-12-01 ~ 2016-04-30	5	
	2016-05-01 ~ 2016-09-30	5		2015-06-01 ~ 2015-10-31	5	
	2015-11-14 ~ 2016-03-31	5		2014-12-01 ~ 2015-04-30	5	
	2015-05-01 ~ 2015-09-30	5		2014-06-01 ~ 2014-10-31	5	
	2014-11-01 ~ 2015-03-31	5		2013-12-01 ~ 2014-04-30	5	
	2014-05-01 ~ 2014-09-30	5		2013-06-01 ~ 2013-10-31	5	
	2013-11-01 ~ 2014-03-31	5		2012-12-01 ~ 2013-04-30	5	
	2013-05-01 ~ 2013-09-30	5		2019-11-01 ~ 2020-03-31	5	
	-	2019-12-01 ~ 2020-04-30		5 (만55세)	-	2019-05-01 ~ 2019-09-30
2019-06-01 ~ 2019-10-31		5 (만55세)	2018-11-01 ~ 2019-03-31	5		
2018-12-01 ~ 2019-04-30		5	2018-05-01 ~ 2018-09-30	5		
2018-06-01 ~ 2018-10-31		5	2017-11-01 ~ 2018-03-31	5		
2017-12-01 ~ 2018-04-30		5	2017-05-01 ~ 2017-09-30	5		
2017-06-01 ~ 2017-10-31		5	2016-11-01 ~ 2017-03-31	5		
2016-12-01 ~ 2017-04-30		5	2016-05-01 ~ 2016-09-30	5		
2016-06-01 ~ 2016-10-31		5	2015-11-14 ~ 2016-03-31	5		
2015-12-01 ~ 2016-04-30		5	2015-05-01 ~ 2015-09-30	5		
2015-06-01 ~ 2015-10-31		5	2019-12-01 ~ 2020-04-30	5		
2014-12-01 ~ 2015-04-30		5	2019-06-01 ~ 2019-10-31	5		
2014-06-01 ~ 2014-10-31		5	2018-12-01 ~ 2019-04-30	5		
2013-12-01 ~ 2014-04-30		5	2018-07-01 ~ 2018-10-31	4		
				2017-12-01 ~ 2018-04-30		5
				2017-06-01 ~ 2017-10-31		5
			2017-01-01 ~ 2017-04-30	4		

【참고】

냉난방계절직 정기 채용 현황

구분	채용일자	응시자			채용자			비고
		계	직전 계약자	신규 지원자	계	직전 계약자	신규 지원자	
1	2016.5.1.	31	28	3	28	28	0	
2	2016.6.1.	24	22	2	22	22	0	
3	2016.11.1.	30	30	0	30	30	0	
4	2016.12.1.	29	25	4	29	25	4	
5	2017.5.1.	31	29	2	31	29	2	
6	2017.6.1.	24	22	2	24	22	2	
7	2017.11.1.	31	28	3	31	28	3	
8	2017.12.1.	28	24	4	28	24	4	
9	2018.5.1.	33	30	3	33	30	3	
10	2018.6.1.	28	25	3	28	25	3	
11	2018.11.1	31	28	3	31	28	3	
12	2018.12.1.	30	26	4	30	26	4	
13	2019.5.1.	30	25	5	30	25	5	
14	2019.6.1.	31	30	1	31	30	1	
15	2019.11.1.	31	27	4	31	27	4	
16	2019.12.1.	34	27	7	34	27	7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p>산학협력단 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6. 3. 1. J의 업무수행교통비(3월분) 25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J, K 업무수행교통비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3. 부터 2020. 1.까지 위 J의 업무수행교통비 등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합계 46,093,325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4명) ○ 통보 -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J의 업무수행교통비 등 합계 46,093,325원을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기 바람

【붙임】

J, K 업무수행교통비 교비회계 집행 현황

(단위: 원)

[서울캠퍼스]

연번	구분	집행일	적요(내역)	집행금액	수령인	계정과목	비고
1	서울캠퍼스	2016.03.01	J 차량보조비(2016년 3월)	250,000원	J	차량유지비	
			K 차량보조비(2016년 3월)	250,000원	K	차량유지비	
2	서울캠퍼스	2016.04.01	J 차량보조비(2016년 4월)	250,000원	J	차량유지비	
			K 차량보조비(2016년 4월)	250,000원	K	차량유지비	
...	중략						
80	서울캠퍼스	2019.10.11	J 업무수행교통비(2019년 10월)	400,000원	J	차량유지비	
	서울캠퍼스	2019.10.11	K 업무수행교통비(2019년 10월)	400,000원	K	차량유지비	
81	서울캠퍼스	2019.11.25	J 업무수행교통비(2019년 11월)	400,000원	J	차량유지비	
	서울캠퍼스	2019.11.25	K 업무수행교통비(2019년 11월)	400,000원	K	차량유지비	
82	서울캠퍼스	2019.12.24	J 업무수행교통비(2019년 12월)	400,000원	J	차량유지비	
	서울캠퍼스	2019.12.24	K 업무수행교통비(2019년 12월)	400,000원	K	차량유지비	
83	서울캠퍼스	2020.01.23	J 업무수행교통비(2020년 1월)	400,000원	J	차량유지비	
	서울캠퍼스	2020.01.23	K 업무수행교통비(2020년 1월)	400,000원	K	차량유지비	
합 계				29,713,325원			

[세종캠퍼스]

연번	구분	집행일	적요(내역)	집행금액	수령인	계정과목	비고
84	세종캠퍼스	2016-03-05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85	세종캠퍼스	2016-04-06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86	세종캠퍼스	2016-05-04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87	세종캠퍼스	2016-06-09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88	세종캠퍼스	2016-07-04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89	세종캠퍼스	2016-08-03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90	세종캠퍼스	2016-09-04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91	세종캠퍼스	2016-10-04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92	세종캠퍼스	2016-11-03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93	세종캠퍼스	2016-12-02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250,000	-	차량유지비	
...	중략						
122	세종캠퍼스	2019-05-02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390,000	-	차량유지비	
123	세종캠퍼스	2019-06-10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390,000	-	차량유지비	
124	세종캠퍼스	2019-07-01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390,000	-	차량유지비	
125	세종캠퍼스	2019-08-01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390,000	-	차량유지비	
126	세종캠퍼스	2019-09-11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390,000	-	차량유지비	
127	세종캠퍼스	2019-10-01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390,000	-	차량유지비	2019.10월부터 54만원으로 인상
128	세종캠퍼스	2019-10-17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140,000	-	차량유지비	2019.10월 14만원 소급인상
129	세종캠퍼스	2019-11-06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530,000	-	차량유지비	
130	세종캠퍼스	2019-12-13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530,000	-	차량유지비	
131	세종캠퍼스	2020-01-06	J 업무수행 차량보조비	530,000	-	차량유지비	
소 계				16,380,000			
총 계(서울캠퍼스, 세종캠퍼스)				46,093,32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2	<p>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안내(2014.8, 2017.1.)’ 및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에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에 당해연도 교비회계(등록금 회계) 수입 총액의 일정비율(‘14연도~’15연도) 2%, (‘16연도) 1.7%, (‘17연도) 1.4%, (‘18연도 이후) 1%) 이내로 준수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이월은 이월금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기타자금(불용액, 예산절감, 사업취소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p> <p>※ 이월금의 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의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명시이월</td> <td>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td> </tr> </tbody> </table>	구분	의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p>○ 경고(5명)</p>
구분	의미					
명시이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table border="1" data-bbox="300 264 1141 510"> <thead> <tr> <th data-bbox="300 264 438 302">구분</th> <th data-bbox="438 264 1141 302">의미</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0 302 438 510">사고이월</td> <td data-bbox="438 302 1141 510">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td> </tr> </tbody> </table> <p data-bbox="279 560 1141 963">-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17년 등록금회계 예산에서 단과대학 사업예산 미집행액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3,778,804천원을 기타이월금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명시 이월금으로 처리하는 등 【붙임1】 “기타이월금 명시 이월 처리 현황”과 같이 2017회계연도 및 2018회계연도에 등록금회계 예산 불용액 합계 8,245,007천원을 기타이월금이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하였고,</p> <p data-bbox="279 1008 1141 1355">· 따라서, 2017회계연도 실제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4,711,861천원인바, 기타이월금 한도(4,017,018천원)를 694,843천원을 초과하게 되는 등 【붙임2】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과 같이 2017회계연도 및 2018회계연도 기타이월금이 이월금 처리기준(합계 6,855,509천원)을 2,322,555천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p>	구분	의미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구분	의미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붙임1】

기타이월금 명시이월 처리 현황

(단위 : 천원)

학교 인식	회계연도			비고
	2017	2018	계	
명시이월금	3,778,804	4,466,203	8,245,007	단과대학 사업예산 미집행액 등

【붙임2】

기타이월금 한도 초과 현황

(단위 : 천원)

항목	회계연도			비고
	2017	2018	계	
기타이월금 (명시이월 처리액)	3,778,804	4,466,203	8,245,007	단과대학 사업예산 미집행액 등
기타이월금 (명시이월 처리 외)	933,057	-	933,057	
합계(기타이월금)	4,711,861	4,466,203	9,178,064	
기타이월금 한도*	4,017,018	2,838,491	6,855,509	
한도 초과액	694,843	1,627,712	2,322,555	

*** 기타이월금 한도** (단위 : 천원)

항목	회계연도		
	2017	2018	계
등록금회계 운영수입	286,929,856	283,849,113	570,778,969
기타이월금 한도율	1.4%	1.0%	
한도	4,017,018	2,838,491	6,855,509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3	<p>전별금 집행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19 고려대학교 예산편성 및 운용 가이드」에는 적법한 회계처리 및 관련된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비용의 성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는 교육부 2018년 회계부분감사에서 구체적 집행기준 없이 교직원에게 전별금(순금 및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대해 '기관경고', '통보**' 처분(2019.1.18.)을 받았는데도,</p> <p>*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및 부속명세표에 따름</p> <p>**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전별금 규정을 정비하고 전별금의 종류 등 상세내역을 예산서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절차(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집행하기 바람</p> <p>- 고려대학교는 2019. 2. 7. 위 통보 처분 이후에도 전별금 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전별금의 종류 등 상세내역을 예산서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절차(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등)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홍보비에서 상품권</p>	<p>○ 경징계(4명)</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500,000원을 구입하여 L에게 퇴직자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붙임】 “전별금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9. 2.부터 2019. 5.까지 13개의 부서에서 구체적 집행 기준 없이 퇴직자 전별금, 보직자 임기만료 등의 명목으로 3개의 계정과목에서 합계 19,894,175원 상당의 상품권 및 순금을 구입하여 위 L 등 교직원 22명에게 지급하고 1명*의 교직원에게는 부서에서 지급하는 전별금과 별도로 「고려대학교 교직원 정년(명예)퇴직 기념품 증정규정」에 따른 퇴직기념품(순금 15돈)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p>* [붙임] 연번 1</p>	

【붙임】

전별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집행일	부서명	지출명목	지급내용	지급처	금액	계정과목
1	2019.2.7.	-	퇴직자전별금	상품권	L	500,000	일반홍보비
2	2019.2.21.	-	퇴직자전별금	상품권	-	1,500,000	기타운영비
3	2019.3.7.	-	---학장 전별금	순금(18.75g)	-	1,083,500	연구관리비
4	2019.3.7.	-	---부학장 전별금	순금(18.75g)	-	1,083,500	연구관리비
5	2019.3.7.	-	---부학장 전별금	순금(18.75g)	-	1,083,500	연구관리비
6	2019.3.7.	-	---부학장 전별금	순금(18.75g)	-	1,083,500	연구관리비
7	2019.3.19.	-	직원 전보 및 퇴직 전별금	상품권	-	200,000	기타운영비
8	2019.3.19.	-	직원 전보 및 퇴직 전별금	상품권	-	200,000	기타운영비
9	2019.3.26.	-	---처장 보직자임기만료	순금(34g)	-	1,990,000	기타운영비
10	2019.3.26.	-	---처장 재직 기념	순금(18.75g)	-	1,127,500	기타운영비
11	2019.3.26.	-	---실장 보직자임기만료	순금(34g)	-	1,990,000	기타운영비
12	2019.4.2.	-	보직자임기만료	순금(10돈)	-	2,084,500	기타운영비
13	2019.4.2.	-	보직자임기만료	상품권	-	1,000,000	기타운영비
14	2019.4.2.	-	보직자임기만료	상품권	-	500,000	기타운영비
15	2019.4.5.	-	보직자임기만료	순금(4.688g)	-	257,125	기타운영비
16	2019.4.5.	-	보직자임기만료	순금(4.688g)	-	257,125	기타운영비
17	2019.4.5.	-	보직자임기만료	순금(4.688g)	-	257,125	기타운영비
18	2019.4.9.	-	보직자임기만료	순금(18.75g)	-	1,000,000	기타운영비
19	2019.4.22.	-	부서이동전별금	상품권	-	200,000	연구관리비
20	2019.5.5.	-	보직자임기만료	상품권	-	1,500,000	연구관리비
21	2019.5.13.	-	보직자사직전별금	순금(15g)	-	833,800	기타운영비
22	2019.5.14.	-	보직자임기만료	순금(1.875g)	-	163,000	연구관리비
합 계						19,894,17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p>승소 채권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 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7. 5. 12. M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확인’에서 승소하고도 2019. 9. 3.에 이르러서야 소송비용 9,219,954원을 확정을 받고 2019. 12. 15. 내용증명을 보내 2020. 2. 감사일 현재 까지도 회수하지 않고 있는 등 【붙임】 “소송비용 확정 채권 미회수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19. 4.까지 위 ‘해임무효소송확인’ 등 총 3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 합계 16,745,422원을 확정하고도 2020. 2.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5명)

【붙임】

소송비용 확정채권 미회수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송명 (사건번호)	승소 확정일	원고	피고	소송비용 확정일 (내용증명서 송부일)	소송비용 확정액
1	해임무효확인 (-)	2017. 5. 12.	M	고려중앙학원	2019. 9. 3. (2019.12.15.)	9,219,954
2	해고무효확인 (-)	2018. 5. 12.	-	고려중앙학원	2019. 8. 14. (2019.8.27.)	3,115,085
3	해고무효확인 (-)	2019. 4. 26.	-	고려중앙학원	2019. 7. 26. (2019.8.27.)	4,410,383
합 계						16,745,422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5	<p>법인카드 사용 부당</p> <p>○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3. 11. 20. 교육부에서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2015.11.1.)」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법인카드는 동일 장소 및 동일 시간대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법인카드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고, 개인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가의 양주 등은 법인카드를 구매할 수 없으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부결제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도,</p> <p>* 사학감사담당관-885(2013. 11. 20.)</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참고]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p> </div> <p>- 고려대학교 비학과 N은 2016. 3. 21.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양주 등 주류를 주로</p>	<p>○ 중징계(12명)</p> <p>○ 경고(1명)</p> <p>○ 시정(회수)</p> <p>-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액 합계 66,933,00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바람</p> <p><별도조치></p> <p>○ 통보(서울특별시)</p> <p>○ 통보(국세청)</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판매하고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여성종업원이 손님테이블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고 손님은 TV에 내장된 노래방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실제 유흥업소인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교내 연구비카드를 243,000원을 결제하는 등 【붙임1】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같이 2016. 3.부터 2019. 12.까지 위 N 등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유흥업소인 ▷▷(대표 O)과 ▽▽(대표 P)*에서 법인카드(교내연구비, 행정용,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총 221차례에 걸쳐 합계 66,933,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음</p> <p>* 사업장 주소지가 ▷▷과 동일한 장소</p> <p>- 나아가 N은 위 2016. 4. 25. ▷▷에서 총 사용액 470,000원을 연구활동비 명목 경비 250,000원(교내연구비 카드, 결제 23:23:48)과 홍보업무 명목 경비 220,000원(행정용카드, 결제 23:24:17)으로 2회 분할 결제하는 등 【붙임2】 “▷▷·▽▽ 사용액 법인카드 분할 결제 내역”과 같이 2016. 3.부터 2018. 12.까지 위 N 등 9명은 ▷▷과 ▽▽에서 총 42건 사용금액 합계 26,251,000원을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카드 등을 번갈아가며 결제하는 방식으로 건당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로 총 91회 분할 결제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서양음식점 위장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원)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법인카드 종류	비고	지출회계
비학과	N	1	2016-03-21	월	22:20:25	▷▷	243,000	교내연구비		교비
		2	2016-04-25	월	23:23:48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3	2016-04-26	화	22:16:22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4	2016-05-03	화	21:34:57	▷▷	247,000	교내연구비		교비
		5	2016-05-19	목	22:13:40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6	2016-05-24	화	21:58:47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7	2016-06-10	금	00:35:27	▷▷	248,000	교내연구비		교비
		8	2016-06-15	수	22:21:16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9	2016-06-30	목	22:14:04	▷▷	153,000	교내연구비		교비
		10	2016-07-15	금	23:06:25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11	2016-07-26	화	21:37:11	▷▷	198,000	교내연구비		교비
		12	2016-08-22	월	22:16:00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13	2016-09-12	월	23:20:56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14	2016-11-16	수	20:49:21	▷▷	247,000	교내연구비		교비
		15	2016-12-20	화	21:59:51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16	2017-01-24	화	20:38:27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17	2017-01-31	화	20:59:05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18	2017-02-27	월	21:10:04	▷▷	227,000	교내연구비		교비
		19	2017-03-03	금	22:24:51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0	2017-03-21	화	22:43:31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1	2017-03-24	금	23:12:55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2	2017-05-19	금	23:02:48	▷▷	247,000	교내연구비		교비
		23	2017-05-24	수	22:24:23	▷▷	223,000	교내연구비		교비
		24	2017-06-07	수	23:02:11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5	2017-06-15	목	23:57:56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6	2017-07-12	수	00:35:44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7	2017-07-14	금	22:54:56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8	2017-07-17	월	21:10:55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9	2017-07-19	수	23:38:11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30	2017-07-24	월	20:38:03	▷▷	248,000	교내연구비		교비
		31	2017-07-31	월	22:31:57	▷▷	235,000	교내연구비		교비
		32	2017-08-28	월	23:35:59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33	2017-09-05	화	19:42:13	▷▷	247,000	교내연구비		교비
		34	2017-09-11	월	21:40:22	▽▽	237,000	교내연구비		교비
		35	2017-09-21	목	22:11:44	▽▽	198,000	교내연구비		교비
		36	2017-11-01	수	22:36:46	▽▽	248,000	교내연구비		교비
		37	2017-11-20	월	22:44:52	▽▽	236,000	교내연구비		교비
		38	2018-02-06	화	22:12:38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39	2018-03-05	월	23:16:41	▽▽	232,000	교내연구비		교비
		40	2018-09-10	월	20:33:47	▽▽	213,000	교내연구비		교비
		41	2018-12-14	금	21:55:08	▽▽	241,000	교내연구비		교비
		42	2018-12-18	화	21:28:07	▽▽	233,000	교내연구비		교비
		43	2016-03-09	수	23:08:15	▷▷	374,000	행정용		교비
		44	2016-04-25	월	23:24:17	▷▷	220,000	행정용	-	교비
		45	2016-04-26	화	22:17:41	▷▷	450,000	행정용		교비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법인카드 종류	비고	지출회계	
		46	2016-05-03	화	21:35:36	▷▷	253,000	행정용		교비	
		47	2016-05-19	목	22:14:12	▷▷	192,000	행정용		교비	
		48	2016-05-24	화	21:59:21	▷▷	198,000	행정용		교비	
		49	2016-06-15	수	22:22:19	▷▷	148,000	행정용		교비	
		50	2016-06-30	목	22:13:21	▷▷	347,000	행정용		교비	
		51	2016-06-30	목	23:19:04	▷▷	250,000	행정용		교비	
		52	2016-07-26	화	21:38:41	▷▷	352,000	행정용		교비	
		53	2016-07-26	화	22:18:13	▷▷	238,000	행정용		교비	
		54	2016-08-22	월	22:16:49	▷▷	300,000	행정용		교비	
		55	2016-09-12	월	23:21:21	▷▷	250,000	행정용		교비	
		56	2016-12-20	화	21:59:24	▷▷	487,000	행정용		교비	
		57	2017-01-02	월	21:57:43	▷▷	400,000	행정용		교비	
		58	2017-01-31	화	21:01:10	▷▷	412,000	행정용		교비	
		59	2017-01-24	화	20:40:05	▷▷	250,000	행정용		교비	
		60	2017-02-27	월	21:09:33	▷▷	273,000	행정용		교비	
		61	2017-03-08	수	22:46:38	▷▷	503,000	행정용		교비	
		62	2017-03-20	월	21:28:43	▷▷	478,000	행정용		교비	
		63	2017-03-21	화	22:43:58	▷▷	250,000	행정용		교비	
		64	2017-05-24	수	22:25:14	▷▷	427,000	행정용		교비	
		65	2017-05-19	금	23:03:21	▷▷	252,000	행정용		교비	
		66	2017-06-07	수	23:02:34	▷▷	250,000	행정용		교비	
		67	2017-07-24	월	20:38:48	▷▷	303,000	행정용		교비	
		68	2017-07-17	월	21:11:25	▷▷	356,000	행정용		교비	
		69	2017-07-31	월	22:32:31	▷▷	265,000	행정용		교비	
		70	2017-09-05	화	19:42:31	▷▷	153,000	행정용		교비	
		71	2017-09-11	월	21:41:10	▽▽	293,000	행정용		교비	
		72	2017-09-21	목	22:12:44	▽▽	482,000	행정용		교비	
		73	2017-10-13	금	22:33:25	▽▽	472,000	행정용		교비	
		74	2017-11-20	월	22:45:58	▽▽	307,000	행정용		교비	
		75	2017-12-11	월	23:53:25	▽▽	508,000	행정용		교비	
		76	2018-02-06	화	22:13:14	▽▽	292,000	행정용		교비	
		77	2018-02-28	수	21:33:08	▽▽	550,000	행정용		교비	
		78	2018-03-05	월	23:17:06	▽▽	368,000	행정용		교비	
		79	2018-07-25	수	22:01:13	▽▽	245,000	행정용		교비	
		80	2018-08-22	수	22:51:00	▽▽	347,000	행정용		교비	
		81	2018-09-10	월	20:33:01	▽▽	387,000	행정용		교비	
		82	2018-10-29	월	21:28:25	▽▽	264,000	행정용		교비	
		83	2018-10-02	화	22:15:45	▽▽	313,000	행정용		교비	
		84	2018-12-18	화	21:25:48	▽▽	487,000	행정용		교비	
		85	2019-06-18	화	20:10:18	▽▽	378,000	행정용		교비	
		86	2019-12-03	화	22:28:22	▽▽	364,000	행정용		교비	
		소 계						24,789,000			
...	중략										
		1	2016-03-09	수	23:10:59	▷▷	240,000	교내연구비		교비	
		2	2016-03-24	목	23:42:14	▷▷	240,000	교내연구비		교비	
		3	2016-12-19	월	21:20:38	▷▷	230,000	교내연구비		교비	
		4	2017-01-02	월	21:11:47	▷▷	230,000	교내연구비		교비	
		5	2017-01-10	화	22:32:34	▷▷	210,000	교내연구비		교비	
		6	2017-04-21	금	23:46:17	▷▷	200,000	교내연구비		교비	
		7	2016-03-09	수	23:12:12	▷▷	320,000	행정용		교비	
		8	2016-03-24	목	23:42:44	▷▷	240,000	행정용		교비	

소속	이름	연번	결제일자	요일	결제시간	상호	결제금액	법인카드 종류	비고	지출회계	
		9	2016-12-19	월	21:21:10	▷▷	240,000	행정용		교비	
		10	2017-01-02	월	21:11:15	▷▷	230,000	행정용		교비	
		11	2017-01-10	화	22:32:08	▷▷	210,000	행정용		교비	
		12	2017-04-21	금	23:45:24	▷▷	200,000	행정용		교비	
		소 계						2,790,000			
		1	2016-06-28	화	01:14:19	▷▷	500,000	교내연구비		교비	
		2	2016-03-18	금	00:02:11	▷▷	600,000	교내연구비		교비	
		3	2017-05-02	화	23:51:42	▷▷	400,000	행정용		교비	
		4	2017-09-28	목	00:52:03	▽▽	300,000	행정용		교비	
		5	2018-03-23	금	00:48:19	▽▽	500,000	행정용		교비	
		6	2018-05-16	수	21:25:05	▽▽	400,000	행정용		교비	
		소 계						2,700,000			
		1	2017-03-08	수	22:48:24	▷▷	497,000	간접비		산학협력단	
		2	2017-03-20	월	21:41:45	▷▷	360,000	간접비		산학협력단	
		3	2018-02-28	수	21:32:44	▽▽	497,000	간접비		산학협력단	
		4	2018-03-23	금	23:29:22	▽▽	1,150,000	간접비		산학협력단	
		소 계						2,504,000			
		1	2018-02-28	수	21:32:26	▽▽	753,000	행정용		교비	
		2	2019-02-07	목	21:32:48	▽▽	900,000	행정용		교비	
		3	2019-02-27	수	22:47:19	▽▽	750,000	행정용		교비	
		소 계						2,403,000			
		1	2016-11-08	화	23:52:47	▷▷	8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	2016-11-16	수	21:41:57	▷▷	850,000	교내연구비		교비	
		3	2018-03-08	목	23:40:09	▽▽	250,000	교내연구비		교비	
		소 계						1,950,000			
		1	2019-01-18	금	23:11:17	▽▽	350,000	교내연구비		교비	
		2	2017-03-21	화	22:44:45	▷▷	400,000	행정용		교비	
		3	2017-10-13	금	22:32:13	▽▽	328,000	행정용		교비	
		4	2018-10-02	화	22:15:16	▽▽	187,000	행정용		교비	
		5	2018-10-29	월	21:27:55	▽▽	276,000	행정용		교비	
		6	2019-01-03	목	23:05:55	▽▽	292,000	행정용		교비	
		소 계						1,833,000			
		1	2019-06-07	금	21:30:02	▽▽	430,000	교외연구비		산학협력단	
		2	2019-10-21	월	20:52:19	▽▽	430,000	교외연구비		산학협력단	
		3	2019-10-28	월	19:27:53	▽▽	380,000	교외연구비		산학협력단	
		4	2019-11-13	수	20:22:03	▽▽	490,000	교외연구비		산학협력단	
		소 계						1,730,000			
		1	2017-03-20	월	21:29:27	▷▷	488,000	행정용		교비	
		2	2017-03-08	수	22:45:43	▷▷	500,000	행정용		교비	
		소 계						988,000			
		1	2019-09-26	목	22:11:58	▽▽	350,000	간접비		산학협력단	
		소 계						350,000			
총 계 (총 13명, 221건)							66,933,000				

【붙임2】

▷▷·▽▽ 사용액 법인카드 분할 결제 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속	이름	법인카드 종류	카드번호	결제일자	요일	결제 시간	결제 금액	상호	사용명목
1	비학과	N	연구비 카드	-	2016-04-25	월	23:23:48	250,000	▷▷	비대학(원)전임교원 연구활동비지원
	비학과	N	행정용 카드	-	2016-04-25	월	23:24:17	220,000	▷▷	홍보업무 관련 경비
	소 계							470,000		
2	비학과	-	연구비 카드	-	2016-03-24	목	23:42:14	240,000	▷▷	비대학(원)전임교원 연구활동비지원
	비학과	-	행정용 카드	-	2016-03-24	목	23:42:44	240,000	▷▷	-
	소 계							480,000		
3	비학과	N	연구비 카드	-	2016-05-03	화	21:34:57	247,000	▷▷	비대학(원)전임교원 연구활동비지원
	비학과	N	행정용 카드	-	2016-05-03	화	21:35:36	253,000	▷▷	업무협의 관련 급식비
	소 계							500,000		
...	중략									
39	비학과	N	행정용 카드	-	2018-09-10	월	20:33:01	387,000	▽▽	행정제도개선 사업비
	비학과	N	연구비 카드	-	2018-09-10	월	20:33:47	213,000	▽▽	비대학전임교원연구활 동비 지원
	소 계							600,000		
40	-	-	행정용 카드	-	2018-10-02	화	22:15:16	187,000	▽▽	업무추진경비(10월)
	비학과	N	행정용 카드	-	2018-10-02	화	22:15:45	313,000	▽▽	업무 제경비
	소 계							500,000		
41	-	-	행정용 카드	-	2018-10-29	월	21:27:55	276,000	▽▽	업무추진경비(10월)
	비학과	N	행정용 카드	-	2018-10-29	월	21:28:25	264,000	▽▽	행정제도개선사업 연구관리비
	소 계							540,000		
42	비학과	N	행정용 카드	-	2018-12-18	화	21:25:48	487,000	▽▽	비대학(원)대내외업무추 진회의비(12월)
	비학과	N	연구비 카드	-	2018-12-18	화	21:28:07	233,000	▽▽	비대학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
	소 계							720,000		
합 계(총 91회 분할)								26,251,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p>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p> <p>○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권고사항(교육부 대학 학사제도과-14415, 2018.12.7)」에 따르면 자녀 등에 대한 강의 회피, 사전 신고제 등 공정한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여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내 하고 자녀가 수강하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대학 본부(교무처 등)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가 부모의 강의를 수강함에도 해당 교원이 미신고,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고,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계획(안)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98, 2018.12.1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4학년도 ~ 2018학년도) 교수-자녀의 부모 강의 수강 여부, 부모 강의 수강 과목에 대한 평가과정 및 결과를 자체 조사하여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였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고려대학교 「사무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기타 학사 및 행정업무의</p>	<p>○ 경징계(6명)</p> <p>○ 경고(4명)</p> <p>○ 개선</p> <p>- 교육부 권고 사항 (대학학사제도과 - 1 4 4 1 5 , 2018.12.7.)에 따라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 등을 위하여 3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① 제도개선 미이행 및 부실조사에 관한 사항</p> <p>- 고려대학교는 최근 5년간(2014학년도 ~ 2018학년도) 교수-자녀 간 부모 강의 수강 여부와 해당 과목 평가과정을 자체 조사한 결과(10건의 교수-자녀 간 부모 강의 수강)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자녀 간 강의 회피와 교수-자녀 간 강의 사전 신고 등을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교수-자녀 간 강의 시 교수는 대학 본부(교무처 등)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위반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교육부에 보고(고려대 교무팀-0967, 2019.5.8., 고려대 학사팀-1776, 2019.10.22.)한 사실이 있음</p> <p>· 특히, 고려대 자체조사에서 대학원 ㄱ학과 Q는 본인이 강의하였고 자녀인 R(학번 *****) 학생이 수강한 2018학년도 1학기 'ㄷ'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는데도 2019.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붙임1】 '2019년 자체조사결과에 따른 미조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위 Q 등 2명은 본인이 강의하였고 자녀가 각각 수강한 총 4개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2019. 1. 고려대 자체조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② 2019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에 따른 조치 미흡에 관한 사항</p> <p>- 또한, 고려대학교는 위와 같이 제도개선 미이행 결과 2019년 1학기에 S(공학부) 본인이 강의하는 'E' 과목을 그의 자녀인 T 학생(공학부, 학번*****)이 수강하는데도 해당 사실을 대학본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종 성적인 'A+'에 대한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대학은 해당 교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붙임2】 '2019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에 따른 조치 현황'과 같이 2019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위 S 등 4명 본인이 강의하는 6개의 과목에서 해당 교수의 자녀가 각각 수강하는 사실을 학교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적산출(A+~B)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대학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③ 조사대상 누락에 관한 사항</p> <p>- 또한, 최근 5년간(2014학년도 ~ 2018학년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를 하면서 교육부의 조사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 시점(2018.12월~2019.1월)에 U(공과)의 자녀인 V 학생(공과)이 재학 하지 않는다는 사유(2017.2월 졸업)로 조사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붙임3】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누락 현황'과 같이 U의 자녀인 V 학생 등 8명의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조사 대상자를 누락한 채 조사 후 교육부에 보고(고려대 교무팀-6152, 2019.1.30)한 사실이 있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 특히, 위 【붙임3】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누락 현황’ 사례 중 교학과 W는 본인이 강의하였고 자녀인 X(학번 *****, 학점 A+) 학생이 수강한 2016학년도 1학기 ‘ㅎ’ 과목의 시험 답안지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1】

2019년 자체조사결과에 따른 미조치 현황

연번	학생(자녀)			수강과목					교수(부모) <소속>	성적	담안지 제출여부	별도 조치사항
	학번	학과	성명	학년도	학기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1	-	스학과	R	2018	1R	-	00	-	Q <스학과>	A	X	X
2	-	스학과	R	2018	1R	-	00	스	Q <스학과>	A	X	X
3	-	스학과	R	2017	2R	-	00	-	Q <스학과>	A	X	X
4	-	교학과	X	2016	1R	-	00	ㅎ	W <-학과>	A+	X	X

【붙임2】

2019년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에 따른 조치 현황

연번	학생(자녀)			수강과목					교수(부모) <소속>	성적	조치현황				담안 지 보관 여부
	학번	학과	성명	학년도	학기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사전 신고 여부	성적 자료 제출 여부	미신고 자료 제출 여부	신고 시 별도 조치 여부	
1	-	기 공학부	T	2019	2R	-	00	-(영강)	S <기공학부>	A	X	X	X	보관	
2	-	기 공학부	T	2019	1R	-	00	트(영강)		A+	X	X	X	보관	
3	-	대학원 기학과	R	2019	1R	-	00	-	Q <기학과>	A+	X	X	X	무 시험	
4	-	대학원 기학과	R	2019	1R	-	00	-		B	X	X	X	보관	
5	-	-	-	2019	2R	-	00	-	- <->	A	X	X	X	무 시험	
6	-	-	-	2019	2R	-	00	-	- <->	A+	X	X	X	보관	

【붙임3】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실태 조사 누락 현황

연번	학생(자녀)			수강과목					교수(부모) <소속>	성 적	조사 누락 사유	답안지 보관 여부
	학번	학과	성명	학년도	학기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1	-	르과	V	2015	1R	-	00	-	U <르과>	B+	조사시점 미재학 (2017.2월 졸업)	보존 년한 경과
2	-	-	-	2014	2R	-	01	-	- <->	A+	조사시점 미재학 (2017.9월~ 2019.2월 휴학)	보존 년한 경과
3	-	-	-	2014	2W	-	00	-	- <->	A	조사시점 미재학 (2017.2월 졸업)	보존 년한 경과
4	-	-	-	2015	1R	-	02	-	- <->	A+	조사시점 미재학 (2017.2월 졸업)	보존 년한 경과
5	-	르과	-	2018	1R	-	00	-	- <르과>	A+	데이터 누락	해당 없음
				2018	1R	-	00	-		A+		해당 없음
6	-	-	-	2016	2R	-	00	-	- <->	B+	조사시점 미재학 (2018.8월 졸업)	제출
				2017	1R	-	00	-		B		제출
				2017	1R	-	00	-		B		해당 없음
7	-	-	-	2017	2R	-	00	-	- <->	A+	조사시점 미재학 (2018.8월 졸업)	제출
				2016	1R	-	00	-		A+		제출
				2016	2R	-	00	-		A+		제출
8	-	표학과	X	2016	1R	-	00	ㅎ	W <->	A+	조사시점 미재학 (2017.3월~ 휴학)	분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p>출석확인 제도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5. 4. 6. 출석확인 자율화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학적·수업지원팀-0193)하고 2016. 11. 1. 「학사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출석점수 등을 고려하여 성적을 평가한다’는 규정과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인 출석확인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고, 이후 2019. 11. 1. 「출석 인정 지침」을 제정하여 출석인정을 교·강사별로 자율화 함으로써 학생의 출석 등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수업마다 적용여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이후 고려대학교 Y는 2016학년도 1학기의 ‘기’ 과목 강의에서 출석확인을 생략하고 출석확인의 결과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최소출석기준 등 출석확인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붙임】 ‘출석 미확인 강의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강사 Y 등 1,186명은 7,156개의 강의에서 출석확인을 생략하고 출석확인의 결과를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출석 미확인 강의 현황

연번	개설연도	학기	학과	학수번호	분반	교과목명	교수명
1	2016	1R	-	-	-	ㄱ	Y
2	2016	1R	-	-	-	ㄱ	-
3	2016	1R	-	-	-	ㄱ	-
4	2016	1R	-	-	-	ㄱ	-
5	2016	1R	-	-	-	ㄱ	-
6	2016	1R	-	-	-	ㄱ	-
7	2016	1R	-	-	-	ㄱ	-
8	2016	1R	-	-	-	ㄱ	-
9	2016	1R	-	-	-	ㄱ	-
10	2016	1R	-	-	-	ㄱ	-
11	2016	1R	-	-	-	ㄱ	-
12	2016	1R	-	-	-	ㄱ	-
13	2016	1R	-	-	-	ㄱ	-
14	2016	1R	-	-	-	ㄱ	-
15	2016	1R	-	-	-	ㄱ	-
16	2016	1R	-	-	-	ㄱ	-
17	2016	1R	-	-	-	ㄱ	-
18	2016	1R	-	-	-	ㄱ	-
19	2016	1R	-	-	-	ㄱ	-
20	2016	1R	-	-	-	ㄱ	-
21	2016	1R	-	-	-	ㄱ	-
22	2016	1R	-	-	-	ㄱ	-
23	2016	1R	-	-	-	ㄱ	-
24	2016	1R	-	-	-	ㄱ	-
25	2016	1R	-	-	-	ㄱ	-
26	2016	1R	-	-	-	ㄱ	-
27	2016	1R	-	-	-	ㄱ	-
28	2016	1R	-	-	-	ㄱ	-
29	2016	1R	-	-	-	ㄱ	-
30	2016	1R	-	-	-	ㄱ	-
31	2016	1R	-	-	-	ㄱ	-
32	2016	1R	-	-	-	ㄱ	-
33	2016	1R	-	-	-	ㄱ	-
34	2016	1R	-	-	-	ㄱ	-
35	2016	1R	-	-	-	ㄱ	-
36	2016	1R	-	-	-	ㄱ	-
37	2016	1R	-	-	-	ㄱ	-
38	2016	1R	-	-	-	ㄱ	-
39	2016	1R	-	-	-	ㄱ	-
40	2016	1R	-	-	-	ㄱ	-
41	2016	1R	-	-	-	ㄱ	-
42	2016	1R	-	-	-	ㄱ	-
43	2016	1R	-	-	-	ㄱ	-
44	2016	1R	-	-	-	ㄱ	-
45	2016	1R	-	-	-	ㄱ	-
46	2016	1R	-	-	-	ㄱ	-
47	2016	1R	-	-	-	ㄱ	-
48	2016	1R	-	-	-	ㄱ	-
49	2016	1R	-	-	-	ㄱ	-
50	2016	1R	-	-	-	ㄱ	-
...	중략						
7146	2019	2R	-	-	-	-	-
7147	2019	2R	-	-	-	-	-
7148	2019	2R	-	-	-	-	-
7149	2019	2R	-	-	-	-	-
7150	2019	2R	-	-	-	-	-
7151	2019	2R	-	-	-	-	-
7152	2019	2R	-	-	-	-	-
7153	2019	2R	-	-	-	-	-
7154	2019	2R	-	-	-	-	-
7155	2019	2R	-	-	-	-	-
7156	2019	2R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8	<p>창업 휴학 제도 운영 부적정</p> <p>○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1216, '14.3.25.)에 따르면 대학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창업휴학의 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있고 창업휴학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닌 경우 세부적인 허용기준을 대학 자체 규정에 명시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의 경우 허용하고 1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허용하며, 대학이 반드시 창업현장을 점검하고 창업휴학을 승인토록 되어 있는데도,</p> <p>- 고려대학교는 2019. 1. 31.이전까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ㄷ공학부 Z 학생(학번 *****)이 전공과 관련 없는 회사(온라인을 통한 전문직무 제공업, 회사명 '◁▷')를 2012. 11. 1. 창업하고 2016. 3. 25. 휴학 신청한 2016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을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현장점검도 없이 허용하는 등 【붙임】 '창업휴학 승인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Z 학생의 창업 휴학 등 59건(30명)을 '창업교육</p>	<p>○ 기관경고</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승인과 현장점검을 생략한 채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위 Z(학번 *****) 학생의 2016년 1학기 창업휴학 등 47건(24명)은 전공과도 무관한데도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승인도 없으며, AA 학생(학번 *****)의 2017년 1학기 창업휴학 등 3건은 창업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휴학이 승인된 사실이 있음</p> <p>* 「창업 휴학 운영 지침」 제정(2019.2.1.) 후 설치·운영</p>	

【붙임】

창업휴학 승인 부적정 현황

연번	휴학 학년-학기	학번	성 명	학과(부)	전공관련 여부	운영위원회 승인 여부	현장방문 여부	창업시점	휴학신청일	창업후 1개월 도과여부	창업 회사	창업 종목
1	2016-1	-	Z	ㄷ공학부	X	X	X	2012.11.1	2016.3.25	O	◁◁	온라인을 통한 전문직무제공업
2	2016-2					X	X		2016.9.21	O		
3	2017-1					X	X		2017.3.2	O		
4	2016-1	-	-	ㄷ공학부	X	X	X	2014.9.11	2016.3.25	O	-	온라인정보제공업
5	2016-2					X	X		2016.9.21	O		
6	2016-2	-	-	-	X	X	X	2016.6.3	2016.8.24	O	-	온라인취업컨텐츠제공
7	2017-1					X	X		2017.3.2	O		
8	2017-2					X	X		2017.9.7	O		
9	2018-1					X	X		2018.3.12	O		
10	2017-1	-	-	ㄴ학과	X	X	X	2014.11.7	2017.2.21	O	-	소프트웨어개발
...	중략											
45	2018-1	-	-	ㄴ학과	X	X	X	2016.10.27	2018.3.15	O	-	평생교육원
46	2018-2					X	X		2018.9.5	O		
47	2018-1	-	-	-	O	X	X	2016.11.3	2018.2.20	O	-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
48	2018-2					X	X		2018.8.3	O		
49	2018-1	-	-	-	O	X	X	2017.1.2	2018.3.13	O	-	소프트웨어개발
50	2018-2					X	X		2018.9.7	O		
51	2018-1	-	-	-	X	X	X	2017.2.24	2018.2.27	O	-	제과점업
52	2018-2				X	X	X	2018.3.19	2018.8.27	O	-	빵 및 과자류 소매업
53	2018-2	-	-	-	X	X	X	2018.3.2	2018.8.23	O	-	디자인
54	2018-2	-	-	ㄴ학과	X	X	X	2018.7.1	2018.9.5	O	-	과일
55	2018-2	-	-	ㄴ학과	X	X	X	2018.8.17	2018.9.12	X	-	양식
56	2018-2	-	-	ㄷ공학부	X	X	X	2017.6.22	2018.8.28	O	-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
57	2018-2	-	-	ㄷ공학부	X	X	X	2018.2.2	2018.8.28	O	-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58	2018-2	-	-	-	X	X	X	2017.8.31	2018.9.4	O	-	음원제작, 온라인플랫폼운영
59	2018-2	-	-	ㄴ학과	X	X	X	2018.1.8	2018.9.12	O	-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9	<p>과목 대체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는 학교규칙에 기재하여야 하며, 고려대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2조에 따르면 교과목의 대체 시 개설되지 아니한 교과목과 대체되는 교과목 사이에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대체는 학과(부)의 심의를 거쳐 학과(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AB(학번 *****) 학생이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아니한 전공 필수 '윤리학' 과목을 '윤리학특강'으로 대체 신청에 대하여 학과(부)의 심의 없이 학과(부)장이 허가 하는 등 【붙임1】 '학과(부) 未심의 과목 대체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AB 등 67명의 학생이 전공 필수 '윤리학' 과목의 대체 신청 등 67건의 전공필수과목 대체에 대하여 학과(부) 심의 없이 학과(부)장이 허가한 사실이 있고, · 이 중 2016학년도 2학기 AC(학번 *****) 학생 과목 대체의 경우 대체 전후 과목('생물 공정 공학'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간 유사성이 없는데도 과목 대체를 허가하는 등 【붙임2】 '유사성 없는 과목 간 대체 현황'과 같이 유사성이 없는 과목('생물 공정 공학'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간 대체 신청을 한 위 AC 등 9명의 학생이 대체 신청한 9건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26명)

【붙임1】

학과(부) 未심의 과목 대체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이름	요구과목				대체과목				대체과목 유사성 여부	과목 대체 결재자		학과 심의 여부 (O, X)
					학수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전공필수여부	학수번호	과목명	개설학과	전공필수여부		성명	직급	
1	2016	1	-	AB	-	윤리학	-	전공필수	-	윤리학특강	-	전공선택		-	학과장	X
2	2016	1	-	-	-	윤리학	-	전공필수	-	응용윤리학	-	전공선택		-	학과장	X
3	2016	2	-	-	-	기호논리학	-	전공필수	-	수리철학	-	전공선택		-	학과장	X
4	2016	2	-	-	-	기호논리학	-	전공필수	-	수리철학	-	전공선택		-	학과장	X
5	2016	2	-	-	-	윤리학	-	전공필수	-	윤리학특강	-	전공선택		-	학과장	X
6	2016	1	-	-	-	화공열역학	-	전공필수	-	에너지열역학	-	전공선택		-	학과장	X
7	2016	2	-	-	-	유체역학	-	전공필수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	전공선택		-	학과장	X
8	2016	2	-	-	-	유체역학	-	전공필수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	전공선택		-	학과장	X
9	2016	2	-	-	-	유체역학	-	전공필수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	전공선택		-	학과장	X
10	2016	2	-	AC	-	생물 공정 공학	-	전공필수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	전공선택	X	-	학과장	X
...	중략															
59	2019	2	-	-	-	생산시스템공학및실험	-	전공필수	-	시뮬레이션및실습	-	전공선택		-	학부장	X
60	2019	2	-	-	-	생산시스템공학및실험	-	전공필수	-	스마트생산운영관리	-	전공선택		-	학부장	X
61	2019	1	-	-	-	공학수학 I	-	전공필수	-	공업수학 I	기공학부	전공선택		-	학부장	X
62	2019	2	-	-	-	공학수학 I	-	전공필수	-	공업수학 I	-	전공필수		-	학부장	X
63	2019	2	-	-	-	공학수학 II	-	전공필수	-	공학수학 II	-	전공필수		-	학부장	X
64	2019	2	-	-	-	대수학 I	-	전공필수	-	대수학 II	-	전공선택		-	학과장	X
합계								67					10			67

【붙임2】

유사성 없는 과목 간 대체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이름	요구과목			대체과목			대체과목 유사성 여부	과목 대체 결재자	
					학수번호	과목명	과목 내용	학수번호	과목명	과목 내용		성명	직급
1	2016	2	-	AC	-	생물 공정 공학	식품(맥주 등), 의약품 등 제조와 수처리 등 환경영역의 바이오소재의 합성 및 분해 영역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 이끼류 등을 다룸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고분자 성형방법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섬유, 필름 및 각종 성형품의 제조공정 해당	X	-	학과장
2	2016	2	-	-	-	생물 공정 공학	식품(맥주 등), 의약품 등 제조와 수처리 등 환경영역의 바이오소재의 합성 및 분해 영역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 이끼류 등을 다룸	-	유변학 및 고분자가공	고분자 성형방법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섬유, 필름 및 각종 성형품의 제조공정 해당	X	-	학과장
3	2016	2	-	-	-	분석화학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리하고 정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다룸	-	생물물리화학II	생물, 물리, 화학의 기초과정	X	-	학부장
4	2017	2	-	-	-	생산계획	제품의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산계획 모형 등을 학습	-	영상정보시스템	영상의 기본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영상처리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실제 응용프로젝트 수행	X	-	학부장
5	2019	2	-	-	-	라틴아메리카경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	스페인어구조의이해	스페인어 문법	X	-	학과장
6	2019	1	-	-	-	한국문화사	한국문화	-	일본문화사	일본문화	X	-	학과장
7	2019	1	-	-	-	재료기계물성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학습하는 것으로 응력변환, 가공경화, 입자미세화 강화, 석출경화 등 학습	-	전자기학	전기와 자기의 상호현상 등 전자기 현상의 전반적인 개념 이해, 맥스웰 방정식 이해, 신소재 공학에 응용하는 부분 학습	X	-	학부장
8	2019	1	-	-	-	재료기계물성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학습하는 것으로 응력변환, 가공경화, 입자미세화 강화, 석출경화 등 학습	-	전자기학	전기와 자기의 상호현상 등 전자기 현상의 전반적인 개념 이해, 맥스웰 방정식 이해, 신소재 공학에 응용하는 부분 학습	X	-	학부장
9	2019	2	-	-	-	품질공학	연속형 데이터 관리, 이산형 데이터 관리, 다중회귀분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이론 학습	-	공급사슬경영	공급사슬 프로세스 등 기업 경영에서 공급사슬의 구조와 개념을 이해	X	-	학부장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0	<p>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 사항(대교협)」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 요소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입시요강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고려대학교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ㄱㄱ은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2017학년도 체육위원회 학생선수 심사위원회 회의(2016.10.18.) 결과 체육특기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입학정원의 3.9배수를 선발하기로 결정하였는데도 모집 정원 1명인 ㄱㄱ종목에서 3.9명을 반올림 한 4명(4배수)을 선발하는 등 【붙임1】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1단계 선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까지 위 ㄱㄱ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2017학년도 체육위원회 학생선수 심사위원회 회의(2016.10.18.) 결과에 따른 3.9배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4.0 배수를 적용하여 42명을 추가 선발한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2018학년도 1단계 서류평가에서 ㄱㄱ 지원자 AD는 입학정원의 4배수에 해당됨에도 최종합격하였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최고점이었던 AE는 최종 불합격하는 등 【붙임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최종 선발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위 AD 등 5명은 1단계 서류평가 결과 3.9배수를 초과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징계(1명) ○ 통보(문책)(2명) ○ 경고(2명) <p>< 별도조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의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였는데도 최종합격하였고 위 AE 등 5명은 1단계 서류 평가 결과 3.9배수에 포함되었는데도 최종 불합격한 사실이 있음</p>	

【붙임1】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1단계 선발 현황

종목 (포지션)	모집 정원 (A)	지원 인원	3.9배수 인원 (B=A X 3.9)	1단계 합격자 수	1단계 3.9배수 초과 현황 ※컷라인 동점자 제외		1단계 3.9배수 초과 최종 합격자 중수
					초과 합격자 수	합격 배수	
2018학년도 수시 특기자전형(체육) (1단계)							
-	3	3	11.7	3		-	
-	1	1	3.9	1		-	
-	2	4	7.8	4		-	
기타	1	7	3.9	4	1	4.0	1
-	1	6	3.9	4	1	4.0	
-	2	11	7.8	8	1	4.0	
-	2	18	7.8	8	1	4.0	
-	1	8	3.9	4	1	4.0	
-	1	3	3.9	3			
-	3	11	11.7	10			
-	3	20	11.7	12	1	4.0	
-	4	62	15.6	16	1	4.0	
-	3	21	11.7	12	1	4.0	
-	2	15	7.8	8	1	4.0	
-	3	16	11.7	12	1	4.0	
-	2	3	7.8	3		-	
소계	34	209			10		1

2019학년도 수시 특기자전형(체육) (1단계)							
개인종목	1	17	3.9	5	2	4.0	
-	1	5	3.9	3		-	
-	1	3	3.9	1		-	
기타	1	11	3.9	5		-	
-	2	8	7.8	8	1	4.0	
-	1	5	3.9	4			
-	1	10	3.9	4	1	4.0	
-	2	9	7.8	9	2	4.0	
-	1	8	3.9	6			
-	3	13	11.7	13	2	4.0	
-	3	22	11.7	14			
-	1	4	3.9	4	1	4.0	
-	2	16	7.8	8	1	4.0	
-	3	13	11.7	11			
-	1	2	3.9	1			
-	3	15	11.7	12	1	4.0	
-	2	13	7.8	8	1	4.0	1
-	3	15	11.7	12	1	4.0	1

종목 (포지션)	모집 정원 (A)	지원 인원	3.9배수 인원 (B=A X 3.9)	1단계 합격자 수	1단계 3.9배수 초과 현황 ※컷라인 동점자 제외		1단계 3.9배수 초과 최중 합격자 중수
					초과 합격자 수	합격 배수	
소계	32	189			13		2

2020학년도 수시 특기자전형(체육) (1단계)

-	3	11	11.7	9			
-	1	1	3.9	1			
기타	3	14	11.7	13	2	4.0	
-	1	7	3.9	4	1	4.0	
-	1	13	3.9	4	1	4.0	
-	2	11	7.8	8	1	4.0	
-	2	14	7.8	10	3	5.0	
-	1	9	3.9	4			
-	2	11	7.8	8	1	4.0	
-	4	17	15.6	16	1	4.0	
-	2	5	7.8	5			
-	2	34	7.8	11			
-	1	20	3.9	4			
-	3	32	11.7	13	2	4.0	
-	1	12	3.9	4	1	4.0	
-	2	17	7.8	10	3	5.0	1
-	1	9	3.9	4	1	4.0	1
-	2	12	7.8	9	2	4.0	
-	4	39	15.6	16			
소계	38	288			19		2
총계	104	686			42		5

【붙임2】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최종 선발 현황

연번	수험번호	성명	1단계_총점 (A)	1단계_석차	1단계_합불	3.9배수 내 합격자 여부	면접점수 (B)	2단계_총점 (A+B)	2단계_석차	2단계_합불	최종 합격여부	1단계 3.9배수 기준 합격자 정정
<2018 ㄱ-종목>												
1	-	AE	172.8	1	합격	○	19.5	79.98	2	불합격	최종불합격	합격
2	-	-	155.09	2	합격	○	16.5	70.78	4	불합격	최종불합격	
3	-	-	154.81	3	합격	○	17.25	71.44	3	불합격	최종불합격	
4	-	AD	146.07	4	합격	X	29.25	80.38	1	합격	최종합격	불합격
... 중략												
<2019 —종목>												
1	-	-	95	1	합격	○		66.5		불합격	면접결시	
2	-	-	94	2	합격	○	16.75	82.55	5	불합격	최종불합격	
3	-	-	94	2	합격	○	18.25	84.05	3	불합격	최종불합격	합격
4	-	-	93	4	합격	○	29.75	94.85	1	합격	최종합격	
5	-	-	93	4	합격	○	15.75	80.85	6	불합격	최종불합격	
6	-	-	89	6	합격	○	20.5	82.8	4	불합격	최종불합격	
7	-	-	89	6	합격	○	15.5	77.8	7	불합격	최종불합격	
8	-	-	87	8	합격	X	29.25	90.15	2	합격	최종합격	불합격
... 중략												
<2019 —종목>												
1	-	-	96	1	합격	○	29.75	96.95	1	합격	최종합격	
2	-	-	96	1	합격	○	17	84.2	6	불합격	최종불합격	
3	-	-	94	3	합격	○	17.5	83.3	7	불합격	최종불합격	
4	-	-	94	3	합격	○	18.75	84.55	5	불합격	최종불합격	합격
5	-	-	93	5	합격	○	15.25	80.35	8	불합격	최종불합격	
6	-	-	92	6	합격	○	15	79.4	9	불합격	최종불합격	
7	-	-	91	7	합격	○	14.25	77.95	12	불합격	최종불합격	
8	-	-	91	7	합격	○	14.75	78.45	11	불합격	최종불합격	
9	-	-	90	9	합격	○	16.25	79.25	10	불합격	최종불합격	
10	-	-	90	9	합격	○	29.5	92.5	2	합격	최종합격	
11	-	-	89	11	합격	○	24	86.3	4	불합격	최종불합격	
12	-	-	87	12	합격	X	29	89.9	3	합격	최종합격	불합격
... 중략												
<2020 —종목>												
1	-	-	97	1	합격	○	24	91.9	3	합격	추가합격미등록	
2	-	-	94	2	합격	○	29.5	95.3	1	합격	최초합격	
3	-	-	94	2	합격	○	29.5	95.3	1	합격	최종합격	
4	-	-	92	4	합격	○	19	83.4	8	불합격	최종불합격	

연번	수험번호	성명	1단계_총점 (A)	1단계_석차	1단계_합불	3.9배수 내 합격자 여부	면접점수 (B)	2단계_총점 - (A+B)	2단계_석차	2단계_합불	최종 합격여부	1단계 3.9배수 기준 합격자 정정
5	-	-	92	4	합격	○	20.5	84.9	5	불합격	최종불합격	합격
6	-	-	91	6	합격	○	19.75	83.45	7	불합격	최종불합격	
7	-	-	91	6	합격	○	20	83.7	6	불합격	최종불합격	
8	-	-	90	8	합격	X	19.75	82.75	9	불합격	최종불합격	
9	-	-	90	8	합격	X	28	91	4	합격	추가합격	불합격
10	-	-	90	8	합격	X	19.5	82.5	10	불합격	최종불합격	
<2020 —종목>												
1	-	-	94	1	합격	○	26.25	92.05	2	불합격	최종불합격	합격
2	-	-	93	2	합격	○		65.1		불합격	면접결시	
3	-	-	90	3	합격	○	19.75	82.75	3	불합격	최종불합격	
4	-	-	89	4	합격	X	30	92.3	1	합격	최종합격	불합격
... 이하생략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1	<p>현장실습 방문 지도 未 실시</p> <p>○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2017.3.1.시행)」 제15조 4항(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및 제17조(학교별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실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도(담당)교수 등 현장실습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위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학칙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매뉴얼(2013~2017)」에 따르면 대학(교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전담부서 등)에서는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형태 및 여건 등을 점검한 후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시행세칙(2014.3.1. 제정)」 제9조(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p> <p>- 고려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ㄱ(2016.03.16~2016.06.10.)’에 참여한 비학과 AG(학번 *****)의 현장실습기관인 (주)◇◇을 방문·지도점검하지 않는 등 【붙임】 “현장실습 방문·지도 未 실시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재학생 1,345명(기간별 중복인원 포함)이 참여한 현장실습기관을 방문·지도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기관경고</p> <p>○ 개선</p> <p>- 관련 규정에 현장실습장 현장방문지도 담당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현장실습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p>

【붙임】

현장실습 방문·지도 未 실시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학번	학생명	교과목	부서	담당	학점	실습시작일	실습종료일	실습기관
1	2016	1R	-	AG	ㄱㄷ	비학과	AF	2	2016-03-16	2016-06-10	◇◇
2	2016	1R	-	-	ㄱㄷ	비학과	AF	2	2016-03-01	2016-03-31	-
3	2016	1R	-	-	-	-	-	3	2016-02-29	2016-03-31	-
4	2016	1R	-	-	-	-	-	3	2016-03-02	2016-03-31	-
5	2016	1R	-	-	-	-	-	3	2016-03-07	2016-04-06	-
6	2016	1R	-	-	-	-	-	3	2016-03-02	2016-03-31	-
7	2016	1R	-	-	-	-	-	3	2016-03-02	2016-06-30	-
8	2016	1R	-	-	-	-	-	3	2016-03-01	2016-03-31	-
9	2016	1R	-	-	-	-	-	3	2016-03-02	2016-03-31	-
10	2016	1R	-	-	-	-	-	3	2016-04-01	2016-04-30	-
...	중략										
1334	2019	1S	-	-	-	비공학부	-	3	2019-06-24	2019-07-19	-
1335	2019	1S	-	-	-	비공학부	-	3	2019-07-15	2019-08-13	-
1336	2019	1S	-	-	-	비공학부	-	3	2019-07-01	2019-07-26	-
1337	2019	1S	-	-	-	-	W	3	2019-07-01	2019-07-26	-
1338	2019	1S	-	-	-	-	W	3	2019-06-24	2019-07-19	-
1339	2019	1S	-	-	-	-	W	3	2019-06-24	2019-07-19	-
1340	2019	1S	-	-	-	-	W	3	2019-06-24	2019-07-19	-
1341	2019	1S	-	-	-	-	W	3	2019-07-22	2019-08-21	-
1342	2019	1S	-	-	-	-	W	3	2019-07-22	2019-08-16	-
1343	2019	1S	-	-	-	-	W	3	2019-07-22	2019-08-16	-
1344	2019	2R	-	-	-	-	-	12	2019-09-02	2019-12-20	-
1345	2019	2R	-	-	-	-	-	12	2019-08-19	2020-01-31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2	<p>대학원 입학전형자료 未보존</p> <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보존 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 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는 입학 전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증빙하기 위하여 대학원 입시관련 서류의 4년 이상 보존을 의무화하며, 「고려대학교 사무관리규정(15.11.1.)」 제39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기타 학사 및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을 증명 등을 위하여 3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보존 연한을 5년으로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15.3.1.)」 제5조 및 「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19.1.30.)」에 따르면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구술전형으로 하고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시문서를 보존하고 보존 연한이 경과된 서류는 폐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6~2019학년도 전·후기 대학원 입학시험 시행안내 및 전형자료 송부(2016.10.24~2019.4.25, 대학원장 내부결재)」 '2016~2019학년도 전·후기 대학원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유의사항'에 따르면 서류평가 및</p>	<p>○ 중징계(12명)</p> <p>○ 경징계(24명)</p> <p>○ 경고(18명)</p> <p><별도조치> ○ 수사의뢰</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구술시험 평가자료는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입학시험 종합평점표로 되어 있고, 서류평가는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에 평가위원별로 수기로 기입하며 구술시험은 서류평가지 사용한 평점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별 평점표에는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평점, 비고(본인 아닐시 이상유무 기재)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주임교수는 서류평가와 구술시험이 끝나면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를 수합하여 포털(KUPID)에 성적 입력을 위해 지원자 성적을 종합한다고 되어 있고, 대학원 행정실은 학과 주임교수에게 개인별 평점표를 소속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하라고 추가 안내하였는데도,</p> <p>- 고려대학교 대학원 ㄱ과 AI는 2016. 10. 31. ~ 2016. 11. 5. 기간 중 지원자 5명(석사 2명, 박사 3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평가'를 실시한 다음, 전형위원들의 개인별 평점표를 수합하고, 포털(KUPID)에 성적을 입력한 후 종합평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을 하고,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평점이 기재된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25부를 2020. 2. 감사일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 “입학전형자료 未보존 현황”과 같이 위 AI 등 대학원 26개 학과 주임교수 54명은 2017학년도 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지원자 3,138명(석사 2,434명, 박사 507명, 석·박사 통합 197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전형을 실시한 다음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 평점을 기재한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를 자체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2020. 2. 감사일 현재 적게는 1개 학기, 많게는 6개 학기 입학 전형자료 1종(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총 12,568부를 보존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입학전형자료 未보존 현황

연번	학과	서류	'17 전기			'17 후기			'18 전기			'18 후기			'19 전기			'19 후기		
			보존 여부	미보존 서류 부수	사유	보존 여부	미보존 서류 부수	사유	보존 여부	미보존 서류 부수	사유	보존 여부	미보존 서류 부수	사유	보존 여부	미보존 서류 부수	사유	보존 여부	미보존 서류 부수	사유
1	기공학과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25	관리소홀	x	8	관리소홀	x	20	관리소홀	x	9	관리소홀	x	3	관리소홀	x	3	관리소홀
		주임교수명	AI			AI			AI			AI			AI			AI		
2	-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150	관리소홀	x	66	관리소홀	x	126	관리소홀	x	54	관리소홀	○			x	66	관리소홀
		주임교수명	-			-			-			-			-			-		
3	-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9	관리소홀	○			○			○			○			○		
		주임교수명	W																	
...	중략																			
23	교학과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222	관리소홀	x	120	관리소홀	x	204	관리소홀	x	114	관리소홀	x	126	관리소홀	○		
		주임교수명	-			-			-			-			-			-		
24	-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292	관리소홀	x	99	관리소홀	x	428	관리소홀	x	123	관리소홀	x	504	관리소홀	○		
		주임교수명	-			-			-			-			-			-		
25	-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585	관리소홀	x	228	관리소홀	x	440	관리소홀	x	232	관리소홀	x	380	관리소홀	○		
		주임교수명	-			-			-			-			-			-		
26	-	서류·구술 시험평가서	x	3	관리소홀	x	21	관리소홀	x	52	관리소홀	x	29	관리소홀	x	18	관리소홀	○		
		주임교수명	-			-			-			-			-			-		

※ 전형위원 개인별 평점표 미보존 부수 = 지원자수 × 전형위원수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3	<p>책임수업시간 미달 교원 급여 未회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고려대학교 학칙(“17.3.1.)」 제23조에 따르면 교원은 학기당 학교규칙이 정하는 최소 교수시간(책임수업시간) 이상의 강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책임수업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17.3.1.)」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책임수업시간은 학기별로 1주에 6시간*(학부수업 3시간 포함)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해당 학기에 책임수업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직후 학기에 보충하여야 하고 보충하지 못할 경우 급여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논문지도, 연구지도는 책임수업시간 미포함 - 고려대학교 AJ는 2019. 미상일에 책임수업시간 충족여부를 점검하면서 AK가 2017학년도 2학기 책임시수(주당 6시간) 대비 책임수업시간 3시간을 미달되게 강의하고 2019학년도 1학기에 3시간을 보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020. 2. 감사일 현재까지 급여 8,298,000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연구년 2018. 3. 1.~2019. 2. 28., 2018. 11. 27. 퇴직 ※ 본봉총액(본봉 2,766,000원 * 12개월) * 3시간 / 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처리하지 못한 교원 급여 합계 8,298천원을 AK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4	<p>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 부적정</p> <p>○ 「평생교육법」 제30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에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운영규칙, 교육과정 포함)는 별지 제8호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규정(15.11.1.)」 제54조 및 「고려대학교 세종평생교육원 규정(16.4.1.)」 제49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과정명, 교육대상, 학습기간, 학습시간, 학습비 등 포함</p> <p>- 고려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6학년도 1학기 ‘죽음교육지도사’ 과정을 신규 개설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p> <p>【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죽음교육지도사’ 등 총 12개 과정을 신규개설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12건)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보고(8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 주의(11명)

【붙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 부적정 현황

연 번	학년도 -학기	강좌명	수강 인원	교육기간	개설 일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교육부 보고	캠퍼스
1	2016-1	죽음교육지도사	13	2016.3.8.~2016.6.14	2016.3.8.	x	x	서울
2	2016-1	온라인마케팅 전문가	39	2016.3.14.~2016.6.27.	2016.3.14.	x	x	
3	2016-2	쉽게 배우는 관상학	12	2016.9.5.~2016.12.19.	2016.9.5.	x	x	
4	2019-2	온라인마케팅 외식산업 경영자	29	2019.9.10.~2019.12.17.	2019.9.10.	x	x	
5	2018-여름	마음을 다스리는 소리 “대금” - 기초배우기	3	2018.7.4.~2018.8.22.	2018.7.4	x	x	세종
6	2018-2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	7	2018.9.6.~2018.11.22.	2018.9.6	x	○	
7	2018-겨울	쉽게 배우는 아코디언 과정	4	2019.1.4.~2019.2.22.	2019.1.4	x	x	
8	2018-겨울	캘리그래피	6	2019.1.7.~2019.2.25.	2019.1.7	x	○	
9	2019-여름	실용음악양상블 기초반	1	2019.7.1.~2019.8.19.	2019.7.1	x	○	
10	2019-2	자존감 힐링 지도사 2급 과정	2	2019.9.4~2019.12.11.	2019.9.4	x	○	
11	2019-겨울	바른 몸과 마음을 위한 필라테스	21	2020.1.7~2020.2.25.	2020.1.7	x	x	
12	2019-겨울	부동산 재테크와 자산관리(야간)	6	2020.1.8~2020.2.26.	2020.1.8	x	x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5	<p>장학금 지급 부적정</p> <p>【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①</p> <p>○ 「고려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9조 제4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휴학생(근로장학생 제외),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근로장학생 제외)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고려대학교는 2017학년도 1학기 시작 전 AL(학번 *****) 학생에게 교우회 장학금(개인명의) 명목으로 수업료 4,000천원을 감면하고, 2017. 3. 27. 위 AL 학생이 유기정학 징계(2017. 8. 11. 징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도 장학금을 반납 받지 않는 등 【붙임1】 “장학금 未회수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위 AL 등 학생 2명에게 장학금 총 7,560천원을 학기 시작 전 지급(수업료 감면 처리)하고 반납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또한, 2017학년도 2학기 ‘외국인 학부 신입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 학생들에게 당초 대학 봉사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업 참여 학생 중 AM(학번 *****)이 휴학중으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자 아무런 근거 없이 근로장학금으로 명목을 변경하여 3,560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2】 “자격미달자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2학기에 위 AM 등 학생 2명이 휴학 및 수업연한초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자 아무런 근거없이 근로장학금으로 명목을 변경하여 합계 7,120천원을</p>	<p style="text-align: center;">【①관련】</p> <p>○ 경고(3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①,②관련】</p> <p>○ 경고(8명)</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p>○ 통보(한국장학재단)</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지급한 사실이 있음</p> <p>【수업료 초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p> <p>○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안내」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장학금(일부 제외)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p> <p>- 고려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AN(학번 *****) 학생에게 ‘미래로장학금’과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지급하면서 수업료보다 2,600천원이 초과된 장학금 7,188천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3】 “수업료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7학년도 2학기까지 위 AN 등 학생 4명에게 수업료 보다 8,431천원이 초과된 장학금 합계 18,606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p>	

【붙임 1】

장학금 未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학과	학번	성명	미달 사유	징계 또는 휴학기간	장학금지급내역			
						학기	지급 방법	장학금명	금액
1	-	-	AL	유기정학	2017.3.27.~2017.8.11.	2017-1	사전 감면	고려대학교 교우회 장학금 (개인명의)	4,000
2	-	-	-	무기정학	2018.10.16.~	2018-2	사전 감면	국가장학금[I 유형] (2,600,000원) / 미래로장학금(960,000원)	3,560
합 계									7,560

【붙임 2】

자격미달자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학과	학번	성명	미달 사유	징계 또는 휴학기간	장학금지급내역			
						학기	지급 일자	장학금명	금액
1	-	-	AM	휴학	2017학년도 1학기~ 2018학년도 2학기	2017-2	2018.1.15	근로장학금 (국제교육원)	3,560
2	-	-	-	수업연한 초과 (9학기자)		2017-2	2018.1.15	근로장학금 (국제교육원)	3,560
합 계									7,120

【붙임 3】

수업료 초과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수혜자			지급 학기	장학금 내역(금액)	기준액 (수업료)	지급액 (장학금)	초과 지급액	학적 상태
	학과	학번	성명						
1	-	-	AN	2016-1	미래로장학금(4,588) 국가장학금 I 유형(2,600)	4,588	7,188	2,600	재학
2	-	-	-	2016-1	미래로장학금(4,588) 국가장학금 I 유형(2,600)	5,229	7,829	2,600	제적
3	-	-	-	2016-1	미래로장학금(4,588) 국가장학금 I 유형(2,600)	5,229	7,829	2,600	재학
4	-	-	-	2017-2	학생처특별장학금	3,560	4,191	631	제적
합 계						18,606	27,037	8,431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6	<p>대학원 성적 부여 및 정정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I학점*으로 처리된 경우 최대 B학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다음 학기 등록 개시 2주일 전까지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때 F학점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성적 입력 유의사항’에 따르면 성적 정정은 성적 정정기간내 완료하여야 하고 이후 성적정정은 불가능하며, 성적 확정 이후 성적을 부여할 경우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I(Incomplete): 해당 학기의 성적평가를 잠정적으로 유보 - 고려대학교 AO는 2016학년도 1학기 ‘ㄱ사’ 교과목을 수강한 AP 학생(학번 *****)에게 I학점으로 처리된 성적을 A+학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1】 “대학원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AO 등 교원 4명이 위 AP 등 학생 6명에게 A+ 또는 A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위 AO는 성적 확정일 이후 성적 정정원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고 성적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임의로 I를 A+로 성적을 정정하는 등 【붙임2】 “대학원 성적 정정기간 이후 성적 정정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AO 등 교원 4명이 위 AP 등 학생 6명에 대하여 성적 정정 기간 이후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지 않고 본인 또는 직원을 통해 성적을 정정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5명) ○ 주의(6명)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 부여된 성적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하고, 성적정정기간 내에만 성적 정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관리를 철저히 하며, 향후 성적 정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붙임1】

대학원 성적 부여 부적정 현황

연번	학기	담당교수			과목명	대상학생			당초 성적	최종 부여 성적	학적 상태
		소속	직급	성명		소속	학번	성명			
1	2016-1	-	-	AO	기스	-	-	AP	I	A+	수료연구 (재학)
2	2017-2	-	-	-	-	-	-	-	I	A	수료
3	2017-2	-	-	-	-	-	-	-	I	A+	수료연구 (재학)
4	2019-1	스학과	-	-	-	스학과	-	-	I	A+	재학
5	2019-1					스학과	-	-	I	A+	휴학
6	2019-1					스학과	-	-	I	A+	재학

【붙임2】

대학원 성적 정정기간 이후 성적 정정 현황

연번	학기	담당교수			과목명	당초 성적	정정 성적	성적정정 기간	성적정정 일시	성적 정정자	성적정정원 제출여부
		소속	직급	성명							
1	2016-1	-	-	AO	기수	I	A+	2016.7.1. ~2016.7.7. (17:00)	2016.7.11. (11:33)	AO (본인)	미제출
2	2017-2	-	-	-	-	I	A	2017.12.27. ~2018.1.3. (17:00)	2018.1.3. (17:14)	- (본인)	미제출
3	2017-2	-	-	-	-	I	A+		2018.1.8. (16:14)	- (행정실 직원)	미제출
4	2019-1	기학과	-	-	-	I	A+	2019.7.1. ~2019.7.8. (17:00)	2019.7.9. (15:29)	- (본인)	미제출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7	<p>대학원 출석 기준 미달자 성적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르면 기타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일반 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교과목의 이수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10대학원 AQ는 2016학년도 2학기 '13' 교과목 이수성적을 부여하면서 수업시간 총 48시수 중 27시수만 출석하여 출석 기준이 미달되는 10학과 학생 AR(학번 *****)에게 'B'학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 “대학원 출석 기준 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AQ 등 교원 2명은 각 교과목 출석 기준이 미달되는 위 AR 등 학생 3명에게 'C'부터 'B+'까지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 통보 - 출석이 수업시간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학생 3명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

대학원 출석 기준 미달자 성적 부여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교과목 담당교수				대상 학생				학점	총 사수	기준 사수	출석 사수	부족 사수	부여 학점
		소속	직위	성명	교과명	소속	학번	성명	학적 상태						
1	2016-2	기오 대학원	-	AQ	기스	기스학과	-	AR	수료	3	48	32	27	5	B
2	2017-1	기오 대학원	-	-	-	기스학과	-	-	수료	3	48	32	24	8	C
3	2019-2	기오 대학원	-	AQ	기스	기스학과	-	-	재학	3	48	32	24	8	B+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8	<p>4대 폭력 예방교육 未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6년도 교원 1,764명 중 1,281명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 '교원 4대 폭력 예방교육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2,748명(중복포함)에 대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붙임】

교원 4대 폭력 예방교육 未 실시 현황

연도	구분	교육대상자 (전체교원)	교육 실시 횟수	교육 이수자	교육 미이수자	교육 이수율
2016	서울캠퍼스	1,474명	2회	385명	1,089명	26.1%
	세종캠퍼스	290명	2회	98명	192명	33.8%
	소계	1,764명		483명	1,281명	27.4%
2017	서울캠퍼스	1,476명	3회	824명	652명	55.8%
	세종캠퍼스	273명	3회	108명	165명	39.6%
	소계	1,749명		932명	817명	53.3%
2018	서울캠퍼스	1,472명	3회	1,259명	413명	71.9%
	세종캠퍼스	262명	3회	234명	28명	89.3%
	소계	1,734명		1,493명	241명	74.6%
2019	서울캠퍼스	1,499명	3회	1,142명	357명	76.2%
	세종캠퍼스	268명	3회	216명	52명	80.6%
	소계	1,767명	3회	1,358명	409명	76.9%
합계		7,014명		4,266명	2,748명	60.8%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9	<p>강의계획안 전산망 未게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설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강의계획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AS는 2016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ㄱ’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안을 교내 전산망에 게시하지 않는 등 【붙임】 “강의계획안 전산망 미게시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 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AS 등 교원 194명은 336개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안을 2020. 2. 감사일 현재까지 교내 전산망에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의 ○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안을 게시하기 바람

【붙임】

강의계획안 전산망 未게시 현황

연번	학년도	학기	대학	학과	과목명	직급	담당교수
1	2016	1	경영대학	경영학과	기초	-	AS
2	2016	1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	-	-
3	2016	1	문과대학	심리학과	-	-	-
4	2016	1	문과대학	심리학과	-	-	-
5	2016	1	문과대학	사회학과	-	-	-
6	2016	1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	-	-
7	2016	1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	-	-
8	2016	1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	-	-
9	2016	1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	-
10	2016	1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	-
11	2016	1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	-
12	2016	1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부	-	-	-
13	2016	1	이과대학	이과대학	-	-	-
14	2016	1	이과대학	이과대학	-	-	-
15	2016	1	이과대학	이과대학	-	-	-
16	2016	1	이과대학	수학과	-	-	-
17	2016	1	이과대학	수학과	-	-	-
18	2016	1	이과대학	수학과	-	-	-
19	2016	1	이과대학	화학과	-	-	-
20	2016	1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	중략						
320	2019	1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	-	-
321	2019	1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	-	-
322	2019	1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	-	-
323	2019	1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	-	-
324	2019	1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	-	-
325	2019	1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	-	-
326	2019	1	학생군사교육단(관)	학생군사교육단	-	-	-
327	2019	2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	-	-
328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29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30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31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32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33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34	2019	2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	-	-
335	2019	2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	-	-
336	2019	2	학생군사교육단(관)	학생군사교육단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0	<p>시설공사 법정경비 未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퇴직공제 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5. 8. 16. “의과대학 ABL-3 실험실 시설공사 및 기타공사”를 ♡♡와 1,740,000천원에 계약하고 2018. 4. 19. 준공하면서 미사용한 퇴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산(감액)하지 않은 법정경비 합계 32,931천원을 ♡♡ 등 10개 업체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부금비 5,484천원을 정산하여 감액하지 않는 등 【붙임】 “건설공사 법정경비 未정산 현황“과 같이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6. 5.부터 2019. 3.까지 위 “의과대학 ABL-3 실험실 시설공사 및 기타공사” 등 총 10건(계약금액 합계 7,706,880천원) 시설공사에 대한 미사용 법정경비(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관리비·퇴직공제부금) 합계 32,931천원을 정산하여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건설공사 법정경비 未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금액	법정경비						미정산 금액 (환수액)	공사 업체	담당자	
				구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1	안암 의료원	의과대학 ABL-3 실험실 시설공사 및 기타공사 (*15.11.01.~*18.04.19.)	1,740,000	준공 인정금액						5,484	5,484	♡♡	-
				감사 인정금액						0			
				미정산금액						5,484			
				미정산금액						5,484			
2	서울 캠퍼스	과학도서관 기계실 노후 증기보일러 및 부속설비 교체공사 (*16.10.31.~*16.12.14.)	350,000	준공 인정금액			1,181	1,730	77		2,988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1,181	1,730	77				
				미정산금액			1,181	1,730	77				
3	안산 의료원	동물실험실 리모델링 공사 (*16.12.29.~*17.02.28.)	405,000	준공 인정금액			1,512	2,215	99		3,826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1,512	2,215	99				
				미정산금액			1,512	2,215	99				
4	서울 캠퍼스	2017학년도 냉동기 세관 및 부속설비 수리 (*17.04.27.~*17.05.30.)	185,000	준공 인정금액			882	1,293	57		2,232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882	1,293	57				
				미정산금액			882	1,293	57				
5	서울 캠퍼스	라이시움 기계실 열원공급설비 개선공사 (*17.05.23.~*17.07.18.)	87,000	준공 인정금액		430	32	46	1		509	-	-
				감사 인정금액		0	0	0	0				
				미정산금액		430	32	46	1				
				미정산금액		430	32	46	1				
6	안암 의료원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신설공사 (*17.12.08.~*17.12.29.)	147,000	준공 인정금액	1,668						276	-	-
				감사 인정금액	1,392*								
				미정산금액	276								
				미정산금액	276								
7	안산 의료원	지하1층 재배치 시설 공사 (*17.12.11.~*18.08.20.)	3,299,450	준공 인정금액			7,588	7,467	572		4,239	-	-
				감사 인정금액			5,493	5,522	373				
				미정산금액			2,095	1,945	199				
				미정산금액			2,095	1,945	199				
8	서울 캠퍼스	제2공학관 외 3개동 철거공사 (*17.12.15.~*18.05.31.)	694,430	준공 인정금액			4,102	6,007	269		10,378	-	-
				감사 인정금액			0	0	0				
				미정산금액			4,102	6,007	269				
				미정산금액			4,102	6,007	269				
9	안암 의료원	수술실 외 향온향습기 교체공사 (*18.05.08.~*18.06.27.)	129,000	준공 인정금액	1,230						157	-	-
				감사 인정금액	1,073*								
				미정산금액	157								
				미정산금액	157								
10	안산 의료원	안산병원 내과중환자실 리모델링 공사 (*19.01.16.~*19.03.12.)	670,000	준공 인정금액			3,705	1,731			2,842	-	-
				감사 인정금액			2,594	0					
				미정산금액			1,111	1,731					
				미정산금액			1,111	1,731					
합계				7,706,880	2,898	430	19,002	20,489	1,075	5,484	32,931		
인정금액	2,465	0	8,087	5,522	373	0							
미정산금액	433	430	10,915	14,967	702	5,484							
미정산금액	433	430	10,915	14,967	702	5,48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사인정내역 : 안전모 등 안전장비 구입비 및 기술안전지도비 등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1	<p>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未분리 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2016. 4. 25. ♣♣와 “고려대학교 중이온가속기 실험동 신축공사(계약금액 14,619,900천원)”를 추진하면서 건축공사에 전기공사(770,000천원) 및 통신공사(123,000천원)를 포함하여 발주·계약하는 등 【붙임】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현황”과 같이 고려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6. 4.부터 2019. 7.까지 위 “고려대학교 중이온가속기 실험동 신축공사” 등 총 8건(계약금액 합계 101,019,452천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 발주·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6명) <p style="text-align: center;"><별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붙임】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 금액	미분리 공사금액		계약업체	담당
							전기	통신		
1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중이온가속기 실험동 신축 공사	2016-04-25	2016-04-28	2017-05-25	14,619,900	777,000	123,000	☞☞	-
2	안산 의료원	안산병원 진료지원동 외 증축공사	2016-10-10	2016-10-10	2018-09-30	19,048,000	1,361,000	868,000	-	-
3	서울 캠퍼스	수당삼양패컬티하우스 신축공사	2017-02-20	2017-02-20	2018-12-31	10,090,000	630,300	148,500	-	-
4	구로 의료원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신축공사	2017-12-27	2018-01-01	2018-12-31	6,850,000	495,572	263,510	☞☞	-
5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교육동 신축 공사	2018-03-27	2018-04-01	2019-10-01	11,932,668	1,672,000	48,000	☞☞	-
6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 공사	2018-03-27	2018-04-16	2019-11-27	20,277,034	3,795,000	130,000	☞☞	-
7	세종 캠퍼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및 부대시설 신설 공사	2018-03-30	2018-04-16	2019-07-12	4,311,850	835,000	152,000	☞☞	-
8	안암 의료원	청담동 KUMC 의료센터 신축공사	2019-07-08	2019-07-29	2021-07-28	13,890,000	945,000	317,000	☞☞	-
합계			-	-	-	101,019,452	10,510,872	2,050,010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2	<p>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 未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관리처는 2015. 3. 20.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2. 11. 준공한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 증축공사”(계약금액 49,767,000천원, 연면적 32,044.47㎡)의 임시사용승인 허가기간('15.3.20.~'18.12.31.)이 완료되었음에도 추가 연장승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당건물을 사용하는 등 【붙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未연장 건물 사용현황”과 같이 위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 증축공사” 및 “고려대학교 미래공학관 증축공사” 총 2동의 건물(연면적 합계 58,764.24㎡)에 대하여 2019. 1.부터 2020. 2.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허가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추가 연장승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2명)

【붙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未연장 건물 사용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임시사용승인 허가기간	담당자
1	고려대학교 하나과학관 증축공사	32,044.47㎡	2/7	2012-11-29	2015-12-11	49,767,000	-	'15. 3. 20. ~ '18. 12. 31.	-
2	고려대학교 미래공학관 증축공사	26,719.77㎡	4/6	2013-04-22	2017-12-20	41,550,000	-	'16. 12. 9. ~ '18. 12. 31.	-
합 계		58,764.24㎡	-	-	-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3	<p>물품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재산관리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관리처장은 매년마다 당해년도 3월 말까지 물품실사 계획을 수립·현장실사를 실시하고, 물품총괄부서의 물품관리 책임자 또는 물품관리자는 물품 실사 완료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익년도 1월 말일까지 관리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고려대학교 재산관리 규정」 제28조, 「물품관리 시행세칙」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변상의 판정에 따라 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관리처는 2018. 2. 5. 「2017년도 물품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기기센터가 2017. 5. 30.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실한 노트북 PC 1대(취득가액 1,745천원 구입일 '05.11.10.)를 내구연한(5년)이 지나 잔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망실 물품에 대한 변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붙임】 “내구연한(5년) 경과한 기계기구 망실물품 현황”과 같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물품조사 결과 위 노트북 PC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실한 총 466건(취득가액 979,021천원)의 망실 물품에 대하여 내구연한(5년)이 지나 잔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물품을 망실한 자에게 변상조치 없이 '주의'만 적용한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2명) ○ 통보 -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내구연한(5년) 경과한 기계기구 망실물품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물품명	모델명·규격	구입일	취득가액	망실조사일	관리부서
1	NOTEBOOK PC	LG, LM70	20051110	1,745	20170530	기기센터
2	NOTEBOOK PC	CPU 1.6G	20050406	1,850	20170530	기기센터
3	노트북	13Z940-GT68K(LG전자)	20150930	1,097	20170608	생명공학부행정실
4	노트북	노트북	20130424	1,320	20170608	생명공학부행정실
5	노트북	노트북	20130424	1,060	20170608	생명공학부행정실
6	컴퓨터 Core 2 Duo	컴퓨터 Core 2 Duo	20080920	1,030	20170608	생명공학부행정실
7	ZOOM SIEM MICROSCOPE 줌살체현미경	ZOOM SIEM MICROSCOPE 줌살체현미경	20021018	3,025	20170608	생명공학부행정실
8	MICROSCOPE MI 휴대용 측정현미경 S/S	MICROSCOPE MI 휴대용 측정현미경 S/S	20020123	4,730	20170608	생명공학부행정실
9	NOTEBOOK PC		20050401	1,490	20170613	생명공학연구소
10	LCD PROJECTOR	LCD PROJECTOR	20100201	1,65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1	컴퓨터 P-III	컴퓨터 P-III	20000929	1,239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2	LASERJET PRINTER(레이저 프린터)	LASERJET PRINTER(레이저 프린터)	20020311	3,014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3	컴퓨터 P-III	컴퓨터 P-III	20000929	1,239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4	컴퓨터 P-III	컴퓨터 P-III	20000929	1,239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5	컴퓨터 P-4	컴퓨터 P-4	20050415	1,173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6	컴퓨터 P-4	컴퓨터 P-4	20050415	1,173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7	컴퓨터 P-4	컴퓨터 P-4	20050415	1,173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8	컴퓨터 P-4	컴퓨터 P-4	20050415	1,173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19	FLUORESCENCE MICROSCOPE 형상형광현미경	FLUORESCENCE MICROSCOPE 형상형광현미경	20021129	47,539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0	컴퓨터 P-III	컴퓨터 P-III	20010213	1,10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1	컴퓨터 P-III	컴퓨터 P-III	20010213	1,10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2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19991210	5,60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3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19970321	9,922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4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19931124	11,00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5	카메라 POLAROID CAMERA	카메라 POLAROID CAMERA	19951210	1,54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6	BEAM PROJECTOR	BEAM PROJECTOR	20050203	3,00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7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20020610	1,76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8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20020610	1,76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29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20020610	1,76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30	MICROSCOPE 현미경	MICROSCOPE 현미경	20020610	1,760	20170616	생명과학부행정실
...	중략					
442	디지털캠코더	vixia HFG10/캠코더	20110818	1,580	20181025	체육위원회 체육지원부
443	디지털캠코더	vixia HFG10/캠코더	20110818	1,580	20181025	체육위원회 체육지원부
444	디지털캠코더	vixia HFG10/캠코더	20110818	1,580	20181025	체육위원회 체육지원부
445	디지털캠코더	vixia HFG10/캠코더	20110818	1,580	20181025	체육위원회 체육지원부
446	디지털캠코더	vixia HFG10/캠코더	20110818	1,580	20181025	체육위원회 체육지원부
447	복사기(디지털 복합기)프린터/스캐너 Kit	제록스복합기dc2055dc	20081120	4,147	20181113	에너지안전팀
448	노트북	소니 SVP13218PKB	20131001	2,050	20181114	전략기획팀
449	웹 카메라	PZ6112	20081211	1,903	20181128	교수학습지원팀
450	NOTEBOOK PC	HP8440P-XX276PP	20110309	2,184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1	노트북	LG XNOTE 15N530-X	20131202	1,276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2	노트북	LG XNOTE Z360-M 시리즈	20131107	1,265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3	노트북	삼성노트북 NT900X3A-A88	20111114	2,400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4	아이패드	Wi-Fi 64GB(케이스, 키보드 포함)	20110324	1,018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5	NOTEBOOK PC	P300-UP77K	20081205	1,760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6	NOTEBOOK PC	NT-X460/AS22B	20081106	1,881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7	NOTEBOOK PC	삼성NT-R700A/A1	20080425	1,656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8	NOTEBOOK PC	LG Xnote C1-A2500T	20061213	2,400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59	NOTEBOOK PC	NT-X11/S201	20061031	2,200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60	NOTEBOOK PC		20060227	2,510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61	NOTEBOOK PC		20040910	3,034	20181220	민족문화연구원
462	노트북	NT-P560-COM	20091014	1,520	20181226	법학전문대학원
463	노트북	NT-P560-COM	20091014	1,520	20181226	법학전문대학원
464	노트북	NT-P560-COM	20091014	1,520	20181226	법학전문대학원
465	NOTEBOOK PC	삼성 노트북	20050221	2,150	20181226	법학전문대학원
466	NOTEBOOK PC	1.6GHZ	20050221	1,925	20181226	법학전문대학원
	합 계			979,021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4	<p>기술이전보상금 과다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고려대학교 지식재산관리 규정」 제19조 및 제20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지식재산관리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는 직무발명의 실시 및 양도 등에 관한 계약은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하고,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주발명자에게 지급하며, 실시보상금은 기술료 수입 중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에게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은 2012. 12. 12. 지식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이전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은 규정과 달리 특허관련 비용 공제없이 기술료 수입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고려대학교(세종) 산학협력단은 2018. 7. 17. 내부결재*로 특허관련 비용 공제없이 기술료 수입의 9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은 2016. 3. 22. 산학협력단 보유 특허 “ㄱㄱ(출원일 2014.1.28. 출원번호 **_****_*****)”을 ‘ㅇㅇ’에 기술이전하고 2016. 5. 13.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료 3,000천원에서 해당 특허관련 비용 ** 공제 없이 70%를 AT 등 4명에게 보상금으로 책정함으로써 1인 당 적게는 30천원 많게는 420천원이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11명) ○ 시정(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다지급된 보상금 합계 184,052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지급되는 등 【붙임】 “기술이전 보상금 과다 지급 현황”과 같이 고려대학교(서울) 산학협력단 및 고려대학교(세종) 산학협력단은 2016. 5.부터 2020. 1.까지 기술이전 137건(서울 100건, 의료원 25건, 세종 12건)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지식재산심의위원회 또는 내부결재를 통해 규정과 달리 기술료 수입에서 특허관련 비용 공제 없이 70~9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합계 232,697천원(서울 139,826천원, 의료원 54,264천원, 세종 38,607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음</p> <p>* 한시적 발명보상금 배분 조정(안) (기술기획팀-0223, 산단장 전결)</p> <p>**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된 비용 합계 1,484천원</p> <p>※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연구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고려하여 산정</p>	

【붙임】

기술이전보상금 과다 지급 현황

<서울>

(단위 : 천원)

연번	기술명칭 (출원일/출원번호) (등록일/등록번호)	기술이전일 (권리자)	기술료수입		특허관련 소요비용	발명자보상금			과다 지급액
			수입일	금액		지급일	금액	수령인	
1	기카 (2014.01.28./**_****_*****) (2015.08.05./**_*****)	2016.03.22. (☞☞)	2016.04.08.	3,000	1,484	2016.05.13.	1,470	AT	420
							420	-	120
							105	-	30
							105	-	30
2	-	2016.03.15. (-)	2016.05.30.	150,000	157	2016.06.03.	105,000	-	110
3	-	2016.03.08. (-)	2016.06.30.	5,000	1,380	2016.07.29.	3,500	-	966
4	-	2016.09.12. (-)	2016.09.21.	30,000	1,462	2016.09.27.	6,300	-	307
							4,200	-	204
							4,200	-	204
							3,150	-	153
							3,150	-	153
5	-	2016.08.12. (-)	2016.09.08.	10,000	234	2016.09.28.	7,000	-	164
...	중략								
96	-	2019.04.25. (-)	2019.04.30.	30,000	300	2019.12.09.	18,900	-	189
							2,100	-	21
97	-	2019.11.25. (-)	2019.12.05.	30,000	300	2019.12.09.	18,900	-	189
							2,100	-	21
98	-	2019.01.15. (-)	2019.01.31.	20,000	3,101	2019.12.18.	7,000	-	1,085
							7,000	-	1,085
99	-	2019.10.20. (-)	2019.12.13.	1,000	2,050	2020.01.02.	665	-	190
							35	-	10
100	-	2019.07.01. (-)	2019.12.30.	10,000	1,644	2020.01.06.	2,000	-	328
							1,275	-	209
							1,650	-	271
							1,125	-	185
							950	-	156
합 계				3,328,782	210,809		2,330,637		139,826

<서울_의료원>

(단위 : 천원)

연번	기술명칭 (출원일/출원번호) (등록일/등록번호)	기술이전일 (권리자)	기술료수입		특허관련 소요비용	발명자보상금			과다 지급액
			수입일	금액		지급일	금액	수령인	
1	-	2016.04.22. (-)	2016.05.09.	14,000	982	2016.05.10.	4,900	-	343
							4,900	-	343
2	-	2016.06.10. (-)	2016.07.11.	60,000	1,213	2016.07.15.	35,000	-	707
							7,000	-	141
3	-	2016.10.24. (-)	2017.03.15.	250,000	6,396	2017.03.22.	113,750	-	1,455
							21,000	-	268
							8,750	-	112
							8,750	-	112
							2,625	-	33
							2,625	-	33
2018.10.05.	250,000	2018.10.15.	175,000	-	2,238				
4	-	2017.03.15. (-)	2017.03.30.	18,625	932	2017.03.30.	14,837	-	2,452
5	-	2016.10.28. (-)	2017.07.20.	80,000	4,006	2017.08.14.	56,000	-	2,804
6	-	2017.07.04. (-)	2017.08.01.	9,090	2,676	2017.08.24.	6,363	-	1,818
...	중략							-	
18	-	2019.03.11. (-)	2019.03.26.	10,000	982	2019.04.12.	3,500	-	343
							3,500	-	343
19	-	2019.03.11. (-)	2019.03.26.	15,000	2,075	2019.04.12.	5,250	-	726
							5,250	-	726
20	-	2019.05.08. (-)	2019.07.19.	5,000	2,048	2019.08.23.	3,500	-	716
			2019.08.13.	5,000		2019.09.02.	3,500	-	716
21	-	2019.07.15. (-)	2019.08.01.	30,000	1,714	2019.09.02.	17,850	-	1,019
							2,100	-	120
							1,050	-	60
22	-	2019.04.25. (-)	2019.05.09.	50,000	2,668	2019.10.07.	35,000	-	933
			2019.10.07.	50,000		2019.11.11.	35,000	-	933
23	-	2019.11.13. (-)	2019.12.11.	15,000	2,590	2019.12.20.	7,350	-	1,269
							3,150	-	544
24	-	2019.08.21. (-)	2020.01.09.	3,000	1,046	2020.01.17.	1,050	-	300
							1,050	-	300
25	-	2019.11.27. (-)	2020.01.09.	15,000	829	2020.01.30.	10,290	-	370
합 계				1,248,385	80,744		877,319		54,264

<세종캠퍼스>

(단위 : 천원)

연번	기술명칭 (출원일/출원번호) (등록일/등록번호)	기술이전일 (권리자)	기술료수입		특허관련 소요비용	발명자보상금			과다 지급액
			수입일	금액		지급일	금액	수령인	
1	-	2018.10.24. (-)	2018.11.06.	9,090	4,520	2018.11.27.	1,636	-	727
							1,636	-	727
							1,636	-	727
							1,636	-	727
							1,636	-	727
2	-	2018.10.24. (-)	2018.11.06.	9,090	3,694	2018.11.27.	1,472	-	654
							1,472	-	654
							1,472	-	654
							1,472	-	654
							1,472	-	654
							818	-	363
3	-	2018.11.08. (-)	2018.11.20.	20,000	2,360	2018.11.27.	9,000	-	2,826
							3,000	-	942
							1,000	-	314
							3,000	-	942
							2,000	-	628
4	-	2018.11.30. (-)	2018.12.31.	5,000	1,839	2019.01.17.	4,500	-	2,000
5	-	2018.11.16. (-)	2019.01.10.	20,000	2,477	2019.02.08.	18,000	-	5,733
6	-	2019.01.23. (-)	2019.01.28.	5,000	1,255	2019.02.12.	4,500	-	1,878
7	-	2018.11.29. (-)	2019.02.15.	5,000	2,720	2019.02.22.	4,500	-	2,000
8	-	2019.05.01. (-)	2019.05.10.	10,000	1,713	2019.05.16.	4,500	-	1,599
							4,500	-	1,599
9	-	2019.05.15. (-)	2019.05.30.	12,500	488	2019.06.27.	11,250	-	2,841
10	-	2019.05.30. (-)	2019.07.02.	10,000	9,655	2019.07.16.	9,000	-	4,000
11	-	2019.07.01. (-)	2019.08.12.	10,000	2,338	2019.09.05.	1,000	-	404
							1,000	-	404
							2,000	-	808
							2,000	-	808
							1,000	-	404
							1,000	-	404
							1,000	-	404
12	-	2019.07.03. (-)	2019.07.08.	5,000	573	2019.10.15.	3,500	-	401
합 계				120,680	33,632		107,608		38,607

※ 밑줄 : 교직원이 아닌 학생 등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5	<p>연구원 이해관계 신고제도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3조 및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보고하고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는 【붙임】 “책임연구원 배우자 연구과제 참여 현황”과 같이 2016. 4.부터 2019. 12.까지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로부터 수주한 18개 연구과제에서 교원 13명이 자신이 책임연구원인 과제에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등 합계 158,905천원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신고제도 등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경고 ○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힐 수 있는 제도(사전신고제도 등)를 마련하기 바람

【붙임】

책임연구원 배우자 연구과제 참여 현황

(단위 : %, 천원)

연번	과제정보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배우자)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소속 및 직급	성명	소속 및 직급	성명	전공	참여율	인건비 등 지급
1	-	20,723	'18.12.19. ~ '19.3.18.	-	-	-	-	한국 고대사	69	6,379
2	-	756,500	'16.6.1. ~ '19.12.31.	-	-	-	-	분자 신경 생물	30	23,478
3	-	20,000	'17.11.1. ~ '19.10.31.	-	-	-	-	홍부 진단 방사 선학	30	
4	-	20,000	'16.4.15. ~ '17.4.14.	-	-	-	-	지역 정치	0	
5	-	349,000	'16.9.1. ~ '17.8.31.	-	-	-	-	고려 시대사	46	31,380
6	-	115,643	'17.11.1. ~ '18.10.31.	-	-	-	-	고려 시대사	0~40	4,800
7	-	130,000	'16.9.1. ~ '17.8.31.	-	-	-	-	세포 노화	42~ 100	20,360
8	-	50,000	'17.6.1. ~ '18.5.31.	-	-	-	-	세포 노화	57~100	10,909
9	-	20,000	'19.1.1. ~ '19.12.31.	-	-	-	-	한국 근대사	9	
10	-	14,000	'16.10.1. ~ '17.6.30.	-	-	-	-	사회 복지 정책		2,000
...	중략									
16	-	458,333	'16.12.1. ~ '18.9.30.	-	-	-	-	분자 신경 생물	50	23,000
17	-	170,000	'16.6.1. ~ '17.5.31.	-	-	-	-	신장 병리	30	
18	-	200,000	'17.1.25. ~ '17.11.30.	-	-	-	-	기타 재활 의학		
합계		3,025,351								158,90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6	<p>외부기술기반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편입</p> <p>○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36조의2 제1항, 제36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고,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하며,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p> <p>*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 연구기관</p> <p>-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7. 12. 27. 산하 고려대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기술이 아닌 동문의 기술(액티비티 연계 마케팅)을 기반으로 창업한 ☆☆(대표자 AU, 2017.</p>	<p>○ 경고(2명)</p> <p>○ 통보</p> <p>- 외부기술기반 창업기업 ☆☆ 등 3개 업체가 고려대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하기 바람</p>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10. 19.창업)의 지분 20%를 10,000천원에 인수하여 해당 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에 대해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붙임】 “외부기술기반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현황”과 같이 2017. 12.부터 2018. 8까지 산하 고려대기술지주회사가 지분을 인수 (출자금 합계 160,000천원)하는 방법으로 동문 등 외부인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3개 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에 대해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붙임】

외부기술기반 창업기업 자회사 편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회사편입일 (회사설립일)	설립방식	최초지분율 (현재지분율)	출자금	창업형태 (주요기술)
1	☆☆ (AU)	-	2017.12.27. (2017.10.19.)	지분편입	20.0 (7.4)	10,000	동문기술창업 (액티비티 연계 마케팅)
2	-	-	2018.07.26. (2018.05.10.)	지분편입	20.0	50,000	타대학 육성기업 (위치기반 영업 솔루션)
3	▼▼ (AY)	-	2018.08.10. (2018.04.02.)	지분편입	20.0 (10.0)	100,000	동문기술창업 (소상공인 예약 시스템)
합 계						160,000	

※ 지분율 20% 미만 변동일 : (▼▼) 2019.04.12. (☆☆) 2018.01.11.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7	<p>연구노트 未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려대학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연구노트는 학교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AV는 연구책임자로 ‘기트(연구기간: 2011. 5. 1. ~ 2016. 4. 30.)’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가 종료된 이후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 “연구노트 未제출 현황”과 같이 2016. 4. 부터 2019. 10. 까지 위 AV 등 연구책임자 82명은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이후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p>※ 고려대학교는 2019. 9.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후 연구과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작성·관리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未제출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아 보관·관리하기 바람

【붙임】

연구노트 未제출 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 책임자			관리부서
		과제시작일	과제종료일 (과제중단일)	소속	직위	성명	
1	기트	2011.05.01.	2016.04.30.	-	-	AV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2	-	2011.05.01.	2016.04.30.	-	-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3	-	2015.05.01.	2016.04.30	-	-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4	-	2015.06.01.	2016.05.31.	-	-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5	-	2013.06.01.	2016.05.31.	-	-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81	-	2018.09.01.	2019.08.31.	-	-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82	-	2018.09.01.	2019.08.31.	-	-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부
83	-	2018.09.01.	2019.08.31.	-	-	-	세종산학 협력단 연구지원팀
84	-	2015.11.01.	2018.10.31.	-	-	-	의료원 산학협력팀
85	-	2015.11.01.	2018.10.31.	-	-	-	의료원 산학협력팀
86	-	2018.06.01.	2019.05.31.	-	-	-	
87	-	2016.11.01.	2019.10.31.	-	-	-	의료원 산학협력팀
88	-	2017.06.01.	2019.05.31.	-	-	-	의료원 산학협력팀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38	<p>의약품 계약 절차 未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의료원 물품구매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실적증명서 및 입찰제안서 등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거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등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내용 및 자격요건 등을 관계관서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이 지침이 정하는 자격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2019. 5. 진료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에 대해 대리인(●● 부장 AW)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였음에도 실제 대표 AX가 참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위 입찰의 낙찰자로, 기존 수의계약하였던 ■■에서 설립한 법인 - 또한, 의약품도매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기존 거래업체인 ■■, ▲▲ 및 ►►이 입찰 시 공고된 수도권 소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나 자료 제출요구 없이 기존 거래업체라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3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p>명목으로 입찰 참가서류 접수처리를 하고 실적평가를 해 만점을 주고 낙찰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있음</p>	